발 간 등 록 번 호
75-6470057-000019-14

의정활동보고서

제224회 정례회(2008. 6. 20 ~ 6. 30)



경상북도의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당면한 도정현안을 논의하고자 제224회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 중에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상태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등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성원속에서 출발한 제8대 도의회 전반기도 이번 회기가 마지막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200여건의 안건 처리와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400여건의 도정현안사항을 시정·개선토록 하였으며, 40

여건의 민원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8대 개원이후 첫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최하여 독도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30건을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의원발의로 직접 재·개정하였으며, 한미FTA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13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이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정국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경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고유가 민생대책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도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되었는지를 심사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이후의 여건 변화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짜

임새 있는 도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Ⅰ. 개 황 .....

Ⅱ. 의사일정 .....

1. 소 집 .....

2. 회 기 .....

3. 활 동 .....

가. 본회의 .....

나. 위원회 .....

Ⅲ. 의안 처리 .....

Ⅳ. 민원 처리 .....

1. 청 원 .....

2. 진 정 .....

가. 접 수 .....

나. 처 리 .....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 접수사항 ·····

2. 조례공포사항 ·····

3. 의회행사 ·····

4. 기타 의정활동사항 ·····

부 록

□ 조례안 ·····

□ 종합심사보고서 ·····

□ 기타안 ·····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24회 정례회는 2008년 6월 20일 11:00 개회하여 6월 30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1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6월 20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4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 하였으며,

휴회기간인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새벽 0시20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의결했다.

경상북도 추경예산의 경우,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된 3,962억원의 증액분에 대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양성자 가속기지원 등) 등 총 23건 32억 9,20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총 14건 22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삭감액 10억 3,2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991억원의 증액분에 대해 기숙형 공립고 설립비 52억원과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운영

지원 4억원 등 2건 56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통과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은 경상북도의 경우, 총예산규모가 4조 5,530억원으로 당초 예산 4조 1,568억원 대비 9.5%(3,962억원) 늘어났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의 경우, 총예산규모가 2조 6,762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3,771억원 대비 12.6%(2,991억원) 늘어났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에서 박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 소득안정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또한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및 취약계층 복지시설 지원, 고유가 안정대책,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투자유치기반 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개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라고 밝혔다.

제2차 본회의를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등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재의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16을 처리하고 지난 6월 20일부터 개회된 제224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이날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에 황상조(경산)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이상용(영양)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고우현(문경), 권영만(봉화), 김기홍(영덕), 김영기(청송), 나규택(고령), 박기진(성주), 박순열(청도), 이상태(울릉), 전찬걸(울진) 등이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8 - 7호 (2008년 6월 9일)

라. 집회일시 : 2008년 6월 20일(금)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8년 6월 20일 ~ 6월 30일 (11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 (누계 47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환경	농수산	통상문화	건설소방	예결특위
223회까지	376	24	60	57	58	50	44	57	26
224회	17	1	2	2	2	2	2	2	4
누 계	393	25	62	59	60	52	46	59	30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3. 활 동

가. 본회의 전체의사일정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월 20일(금) 11:00 개의 **(제1차 본회의)**	※개회식 1.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7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4.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5.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8. 경상북도 신도청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9.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일간
6월 21일(토) ~ 6월 24(화)	○ 상임위원회 활동	4일간
6월 25일(수) ~ 6월 29(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일간
6월 30일(월) 11:00 개의 **(제2차 본회의)**	○ 안건처리(폐회)	1일간

나. 위원회

휴회기간인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소관 기관별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8. 6. 23(월) 16:00 (제1차)	○ 200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200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제22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6. 20 ~ 6. 30(11일간) 】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6.20(금)	본회의 (11:00)	▢ 제1차 본회의 ○ 개 회	본회의장
6.21(토) ~ 6.22(일)		○ 휴 회	
6.23(월)	제1차 상임위 (10:30)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07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08 추경예산안 심의 ○ 기획조정본부, 새경북기획단	기획경제위 회 의 실
6.24(화)	제2차 상임위 (10:30)	▢ '07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08 추경예산안 심의 ○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경제과학진흥본부	기획경제위 회 의 실
6.25(수) ~ 6.29(일)	예결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 결 위 회 의 실
6.30(월)	본회의 (11:00)	▢ 제2차 본회의(안건처리, 폐회)	본회의장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6. 20 ~ 6. 30(11일간) 】

일 시	차 수	내 용	장 소
6.20(금) 11:00	본회의 제1차	□ 개회 ○ 정례회 회기결정 및 안건처리	본회의장
6. 23(월) 11:00	상임위 제1차	□ 2007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도립경도대학 □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도립경도대학 □ 2007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행정지원국(자연환경연수원 포함) □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행정지원국(자연환경연수원 포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6.24(화) 11:00	상임위 제2차	□ 2007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관실 ○ 보건복지여성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보건복지여성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25(수) ~6.29(일)	예결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결특위 회의실
6. 30 (월) 11:00	본회의 제 2차	□ 안건처리, 폐회	본회의장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교육환경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6. 20 ~ 6. 30(11일간)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6. 20(금) 11:00	□ **제1차 본회의** (개회) ❍ 경상북도 신도청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 도청이정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장
6. 23(월) 11:00	□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 2007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 2008 경상북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 2007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2008 경상북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임위회의실
6. 24(화) 11:00	□ **제2차 교육환경위원회** ❍ 경상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청 소관) ❍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청 소관) ❍ 2007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청 소관) ❍ 200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교육청 소관)	〃
6. 25(수) ~ 6. 29(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6. 30(월) 11:00	□ **제2차 본회의** (폐회) ○ 안건처리	본회의장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6. 20 ~ 6. 30(11일간) 】

일 시	구 분	안 건	비 고
6. 20(금) 11:00	제 1 차 본회의	❍ 개회식 - 안건 처리	본회의장
6. 21(토) ~ 6. 22(일)		❍ 휴 회	
6. 23(월) 11:00	제 1 차 농수산 위원회	❍ 농수산국 소관 - '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 회의실
6. 24(화) 11:00	제 2 차 농수산 위원회	❍ 농업기술원 소관 - '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6. 25(수) ~ 6. 29(일)		❍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6. 30(월) 11:00	제 2 차 본회의	❍ 안건처리 ❍ 폐 회	〃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6. 20 ~ 6. 30(11일간) 】

일 시	구 분	내 용	비 고
6.20(금)	본회의 11:00	○ **제1차 본회의(개회, 안건처리)**	본회의장
6.21(토) ~ 6.22(일)		○ 휴 회	
6.23(월)	**상임위** 11:00	○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 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관광산업진흥본부) ②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③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국) ④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통상문화위원회 회의실
6. 24(화)	**상임위** 11:00	○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 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투자통상본부) ②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통상문화위원회 회의실
6. 25(수) ~ 6. 29(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6. 30(월)	본회의 11:00	○ **제2차 본회의(안건처리, 폐회)**	본회의장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6. 20 ~ 6. 30(11일간) 】

日 時	內 容	備 考
6. 20(금) 11 : 00 ~	□ 제1차 본회의 ○ 개 회	본회의장
6. 21(토) ~ 6.22(일)	○ 휴 회	
6. 23(월) 11 : 00 ~	□ 제1차 상임위 활동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건설소방위회 의 실
6. 24(화) 11 : 00 ~	□ 제2차 상임위 활동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소방본부 소관 ○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소관 ○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25(수) ~ 6.27(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결위회의실
6. 28(토) ~ 6.29(일)	○ 휴 회	
6. 30(월) 11 : 00 ~	□ 제2차 본회의 ○ 안건처리 및 폐회	본회의장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일정

일정			심사대상
일자	시간		
제7차 예결특위 6.25(수)	10:30~12:00	90	1.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총괄 제안설명(기획관리국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교육청 소관) ◆ 토론·의결
	12:00~13:00	60	중식
	13:00~14:30	90	2.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총괄 제안설명(행정지원국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행정지원국,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경북도립대학 -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14:30~15:40	70	-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기획조정본부, 경제과학진흥본부, 공무원교육원
	15:40~16:00	20	- 의회사무처
	16:00~17:30	90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 투자통상본부, 문화체육국, 관광산업진흥본부 -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17:30~18:00	30	- 토론·의결(도청소관)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일정

일정			심사대상
일자	시간		
제8차 예결특위 6.26(목)	10:30~12:30	120	1. 200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기획관리국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교육청 소관)
	12:30~14:00	90	중식
	14:00~15:40	100	2.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기획조정본부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기획조정본부, 새경북기획단, 공보관실, 경제과학진흥본부, 공무원교육원
	15:40~16:50	70	-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경북도립대학
	16:50~18:00	70	-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일정			심 사 대 상
일 자	시 간		
제9차 예결특위 6.27(금)	10:30~11:40	70	2.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질의·답변 - 투자통상본부, 문화체육국, 관광산업진흥본부
	11:40~12:00	20	- 의회사무처
	12:00~13:00	60	중 식
	13:00~14:00	60	-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14:00~15:00	60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4.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5:00~16:30	90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16:30~18:00	90	1. 200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토론·의결 2.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토론·의결

Ⅲ. 의안처리

(2008.6.30현재-224회 최종) ※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50 (218)	50 (214)	41 (168)	8 (41)	- (4)	1 (1)		- (4)	
조례안	소 계	31 (132)	31 (129)	25 (98)	5 (27)	- (3)	1 (1)		- (3)	
	의 회 제 안	10 (34)	10 (32)	9 (26)	1 (6)				- (2)	
	도지사 제 출	16 (73)	16 (72)	12 (54)	3 (15)	- (2)	1 (1)		- (1)	
	교육감 제 출	5 (25)	5 (25)	4 (18)	1 (6)	- (1)				
규 칙 안		- (3)	- (3)	- (2)	- (1)					
예산·결산		4 (20)	4 (20)	2 (8)	2 (12)					
동의·승인		5 (25)	5 (24)	5 (24)	- -				- (1)	
건 의 안		- (4)	- (4)	- (4)	- -					
결 의 안		3 (12)	3 (12)	2 (10)	1 (1)	- (1)				
기 타 안		7 (22)	7 (22)	7 (22)	- -					

◆ 상임위 유보중인 안건(4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07.3.14상정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6.12심사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11.5상정유보)

○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통상문화위원회-'07.12.4심사유보)

Ⅳ. 민원처리(2008. 6. 30.현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5 (44)	(2)	(6)	2 (5)	(17)	(1)	1 (2)	(4)	(2)	2 (5)
의 회 운 영	(3)	(1)								(2)
기 획 경 제	4 (8)			2 (4)	(1)		(1)			2 (2)
행 정 보건복지	(5)	(1)	(4)							
교 육 환 경	(4)					(1)		(3)		
농수산	(2)								(2)	
통 상 문 화	1 (5)		(2)	(1)			1 (1)	(1)		
건 설 소 방	(15)				(14)					(1)
특 별 위원회	(2)				(2)					

※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5 (44)	5 (44)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4 (8)	4 (8)				
행 정 보건복지	(5)	(5)				
교육환경	(4)	(4)				
농 수 산	(2)	(2)				
통상문화	1 (5)	1 (5)				
건설소방	(15)	(15)				
특별위원회	(2)	(2)				

※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손진영의원 외 33명 (2008. 3. 12)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8. 4. 11)
김수용의원 외 20명 (2008. 3. 17)	경상북도의회의정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2008. 4. 11)
경상북도지사 (2008. 4. 4)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2008. 4. 11)
경상북도지사 (2008. 4. 4)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08. 4. 4)	경도대학 교명변경 동의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8. 4. 11)
경상북도지사 (2008. 4. 4)	경상북도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환경위원회 (2008. 4. 11)
경상북도교육감 (2008. 4. 4)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08. 4. 9)	공동시설세 부과지역변경 및 추가고시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8. 4. 11)

2. 조례 공포사항(조례 2)

이 송 일	이송처	건 명	공 포 일
2008. 3. 11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2008 3. 31
2008. 3. 11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2008. 3. 31

3. 의회 행사

◦ 『의정연구회』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08. 3. 13(목) 11:30 ~ 18:30

▪ 장 소 :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의정연구회 소속의원 및 도의원

· 내 용 : 초청인사 특강, 질의·토론 등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도청노조 3기 출범 및 위원장 취임식

· 일 시 : 2008. 3. 6(목), 16: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14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8. 3. 6(목), 14:30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특별위원회회의실

· 참 석 : 김응규 의회운영위원장

◦ 경상북도 투자유치설명회

· 일 시 : 2008. 3. 12(수), 10:30

· 장 소 : 서울 웨스턴조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 일 시 : 2008. 3. 13(목), 11:00

· 장 소 : 제이스 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회의
· 일 시 : 2008. 3. 14(금) 15:00, 4. 4(금) 15: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일 시 : 2008. 3. 18(화), 13: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8 봄철 나무심기 행사
· 일 시 : 2008. 3. 19(수), 10:30
· 장 소 : 영덕 해맞이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박순열 교육환경위원장, 도의원

◦ 포항-삼척 철도사업(1단계) 기공식
· 일 시 : 2008. 3. 20(목), 14:30
· 장 소 : 포항 달전초등학교
· 참 석 : 이상천 의장

◦ 獨 지멘스사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 일 시 : 2008. 3. 21(금), 12:30
· 장 소 : 포항 테크노파크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16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08. 3. 21(금), 10:00

· 장 소 :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 참 석 : 박순열 교육환경위원장, 도의원

◦ 장애인예술제 도 예선대회 시상식

· 일 시 : 2008. 3. 28(금), 14: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상시 개장식

· 일 시 : 2008. 4. 1(화), 13:30

· 장 소 : 경주 엑스포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8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개막식

· 일 시 : 2008. 4. 3(목), 11:00

· 장 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제40주년 향토예비군창설 기념식

· 일 시 : 2008. 4. 4(금), 14:00

· 장 소 :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안순덕 부의장

◦ 산림녹화기념 숲 개원식

· 일 시 : 2008. 4. 10(목), 14:00

· 장 소 : 고령군 장기리
· 참 석 : 박순열 교육환경위원장

◦ 2008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 일 시 : 2008. 4. 11(금), 11:00
· 장 소 : 구미 금오공고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클린경북 만들기 실천대회
· 일 시 : 2008. 4. 11(금), 14:00
· 장 소 : 청도 이서천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46회 도민체전 준비상황 보고회 및 성공기원 교통질서 실천 다짐대회
· 일 시 : 2008. 4. 14(월), 10:20
· 장 소 : 영천시청, 영천시민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도청이전 평가기준 주민공청회 개최
· 일 시 : 2008. 4. 14(월) ~ 4. 15(화), 2일간
· 장 소 :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영덕 예주종합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도의원

부 록

- 조례안 : 11건
- 종합심사보고서 : 4건
- 기타안 : 2건

【조례안 등 : 17건】

□ 조례안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 종합심사보고서 ·····

○ 2008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2008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 2007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2007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기타안 ·····

○ 경상북도 신도청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6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236명”을 “4,243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912명”을 “1,919명”으로 한다.

별표3중 “합 계”란 및 “일반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합 계		4,243	1,204	98	2,546	395
일반직	소 계	1,381	995	55	78	253
	2~3급	1		1		
	3 급	9	8		1	
	3~4급	1	1			
	4 급	70	50	7	5	8
	5 급	272	221	8	16	27
	6 급	469	339	19	27	84
	7 급	478	336	20	23	99
	8 급	81	40		6	3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36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912명

2~4. (생략)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합 계	4,236	1,197	98	2,546	395

	소 계	1,374	988	55	78	253
일	2~3급	1		1		
	3 급	9	8		1	
	3~4급	1	1			
반	4 급	69	49	7	5	8
	5 급	271	220	8	16	27
	6 급	468	338	19	27	84
직	7 급	474	332	20	23	99
	8 급	81	40		6	35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4,243명……

1. …… 1,919명

2~4. (현행과 같음)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합 계	4,243	1,204	98	2,546	395

	소 계	1,381	995	55	78	253
일	2~3급	1		1		
	3 급	9	8		1	
	3~4급	1	1			
반	4 급	70	50	7	5	8
	5 급	272	221	8	16	27
	6 급	469	339	19	27	84
직	7 급	478	336	20	23	99
	8 급	81	40		6	35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6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사무처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소속 행정기관에”를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경상북도 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사무처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소속 행정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로 한다.

제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의 권한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⑥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 (목적) ----------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사무처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 ----------	제1조 (목적) ----------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사무처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소속 행정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신속한 개발사업추진 및 원스톱민원서비스 제공
제2조 (위임사항) ①~④(생략)	제2조 (위임사항) ①~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도지사의 권한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 와 같다	
〈 신 설 〉	⑥ 제1항 [별표 1] 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경제과학진흥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생활경제 교통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동법 제4조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동법 제7조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	동법 제8조제3항	
	마.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또는 제한명령	동법 제9조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동법 제10조	
	자. 안전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명령, 확인·평가	동법 제12조	
	아. 안전관리 선임·해임·퇴직사실 신고 수리, 선임기간 연장승인, 해임요구	동법 제16조	
	차. 위해방지 조치명령,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명령, 시설 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폐기명령, 시설 등의 봉인	동법 제29조	
	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상필요한 조정명령	동법 제34조	
	카.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 및 시설·용기·용품·장부·서류 기타물건 조사	동법 제38조	
	타. 청문	동법 제40조	
	파.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2조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생활경제 교통팀	가.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동법 제11조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혜업의 신고	동법 제12조제2항	
	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동법 제13조제3항	
	마.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14조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명령,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대집행	동법 제30조	
	사.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동법 제38조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동법 제49조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은 제외한다)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동법 제33조	
	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동법 제34조	
	다.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35조	
	라.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	동법 제38조	
	마. 청문	동법 제40조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기, 냉동기, 특정시설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나.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	동법 제9조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동법 제9조의2	
	라.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동법 제11조 제4항	
	마. 안전성 향상계획 변경 명령	동법 제13조의2 제2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생활경제 교통팀	바.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수리	동법 제15조 제3항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사.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동법 제15조 제6항	
	아.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	동법 제15조 제7항	
	자. 완성검사	동법 제16조 제3항	
	차. 임시사용 허가	동법 제16조 제4항	
	카. 용기 등의 검사	동법 제17조	
	타.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동법 제18조	
	파. 위해 방지조치 등	동법 제24조	
	하. 청문	동법 제35조의3	

투자통상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투자유치팀	1.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단지관리팀	1.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2.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의 위임·위탁	동법 제31조	
	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동법 제33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법원 통보	동법 제55조 제1항·제3항·제5항	

관광산업진흥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관광개발팀	1. 관광(단)지의 지정 등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나. 관광(단)지 지정 협의 다. 관광(단)지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 라. 관광(단)지 지정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2. 관광지 지정을 위한 해당지역 조사측량 실시	동법 제53조	
	3.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다. 조성계획 승인(변경) 협의	동법 제54조	
	4.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전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 승인	동법 제55조	
	5.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및 개선명령 나.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 연장 다. 관광(단)지 지정 실효 및 취소 고시	동법 제56조	

문화체육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동법 제13조	
	다. 등록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수리	동법 제17조	
	라.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변경등록	동법 제19조	
	마.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승인취소 통보	동법 제28조	
	바. 시정명령	동법 제30조	
	사.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동법 제31조	
	아. 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쇠명령, 영업정지	동법 제32조	
	자. 청문실시	동법 제33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0조	

환경해양산림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2.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관한 권한		
	가. 황 함유기준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동법 제41조 제4항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동법 제42조	
	다. 이행완료보고서 접수	동법 시행령 제40조	
	라.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승인	동법 시행령 제41조	
	마.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	
	바.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수리, 고체 연료사용승인서 발급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사.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아.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	동법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3.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수리	동법 제43조 제1항	
	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동법 제43조 2항	
	다.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 명령	동법 제43조 제3항	
	라.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수리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	
	마. 신고증명서 발급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8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은 제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리, 신고증명서 발급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동법 제44조 제7항	
	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	
	마. 조치기간 연장 승인	동법 제45조 제4항	
	바.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	동법 제82조	
	사. 청문	동법 제85조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나.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13조 1항·제2항	
	다.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16조	
	6.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7.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8. 유독물관리자 과정 및 양성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보건복지여성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정책과	1.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의료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나. 의료보수의 신고	동법 제45조	
식품안전팀	1.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변경)·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	동법 제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다. 허가증,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동법 제7조 제1항, 제2항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동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동법 제8조 제3항	
	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동법 제10조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	동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동법 제13조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동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차. 마약의 도매보고	동법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	동법 제29조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신고	동법 제33조 제2항	
	파. 허가 등의 제한	동법 제37조	
	하. 출입·검사와 수거	동법 제41조	
	거. 폐기 명령 등	동법 제42조	
	너. 업무보고 등	동법 제43조	
	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동법 제44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식품안전팀	러. 청문	동법 제45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머. 과징금 처분	동법 제46조	
	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변경허가	「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수리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다. 보고 지시와 검사	동법 제69조	
	라. 업무 개시 명령 등	동법 제70조 제1항	
	마. 폐기 명령 등	동법 제7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바. 검사명령	동법 제73조	
	사. 개수명령	동법 제74조	
	자.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명령	동법 제76조 제1항	
	차. 청문	동법 제77조	
	카. 약사감시원 등 임명	동법 제78조	
	타. 허가증 갱신	동법 제80조	
	파.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81조	
	하.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98조	

건설도시방재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협의 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동법 제33조	
	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동법 제32조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동법 제48조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변경, 폐지포함), 고시, 협의권한 및 서류의 공람	동법 제88조, 제90조 내지 제92조	
	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권한	동법 제98조	
	3.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포함) 및 고시, 협의 권한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7조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고시	동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라.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동법 제11조 제3항	
	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동법 제11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바.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동법 제12조 제4항	
	사.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동법 제13조	
	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협의권	동법 제17조	
	자. 선수금 승인	동법 제25조	
	차.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을 권한	동법 제26조	
	카. 환지계획의 인가(변경)	동법 제28조	
	타. 청산금의 징수위탁 수행	동법 제46조	
	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	동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하.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동법 제51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거.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동법 제52조 제3항	
	너.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동법 제53조	
	더.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동법 제58조 제1·3·4항	
	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동법 제66조 제3항	
	머.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동법 제68조 제2항	
	버.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동법 제74조 제1항	
	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동법 제75조	
	어. 청문 실시	동법 제76조	
	5.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중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동법 제19조의2 제1항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동법 제21조 제2항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동법 제26조 제3항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동법 제27조 제2항	
	바. 개발사업이 준공인가 및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 의뢰	동법 제37조 제2항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동법 제37조 제5항	
	아.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 지시 및 검사(상기 가호 내지 사호에 관한 다음권한)	동법 제47조 제1항	
	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상기 가호 내지 아호에 관한 권한)	동법 제48조	
	6. 기초조사의 실시	동법 제4조	
	7.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	동법 제6조	
	8.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동법 제7조, 제7조의4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9.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원상회복명령	동법 제12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0.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동법 제7조의2, 제7조의4	
	11.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해제, 전환 및 고시	동법 제13조, 제13조의2	
	12.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동법 제18조	
	13.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동법 제18조의2	
	14.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의제 및 준공인가	동법 제19조의2, 제21조, 제37조	
	15. 산업단지내 토지에의 출입 등	동법 제25조	
	16.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동법 제26조	
	17. 산업단지내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동법 제27조	
	18.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합의	동법 제38조	
	19.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검사 등	동법 제47조	
	20.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인가·승인의 취소, 중지처분 등	동법 제48조	
	21.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동법 제49조	
	2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로철도과	1.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지방도에 한함.) (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가. 도로공사계획 수립 및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3	
	나.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동법 제31조	
	다.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동법 제57조 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부지 점용 양도신고	「도로법」 제4조	
	나. 지방도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	동법 제40조	
	다. 도로점용료의 징수	동법 제41조	
	라. 도로점용자의 원상복구면제 승인	동법 제43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지적과	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가.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제16조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등 협의	동법 제17조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동법 제19조	
	라. 주택의 감리 등	동법 제24조	
	마.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	동법 제24조의3	
	바.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동법 제25조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3.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지번변경의 승인	「지적법」 제4조 제2항	
	나. 지정공부의 반출 승인	동법 제8조 제2항	
	다. 지정공부의 복구	동법 제12조	
	라. 도면의 재작성 승인	동법 제13조 제1항	
	마.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동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바. 축척변경의 승인	동법 제23조 제1항	
	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동법 제36조	
	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동법 시행령 제44조	
	자.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동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6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하고, “수당중 일반직의사 및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등의”는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별표 3]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및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삭제>-------.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및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일반직의사[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의사:[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제2조(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별표 3]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3]

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

(월지급액, 단위:원)

구 분	경 력 직 공 무 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이하	
지급액	650,000원	650,000원	650,000원	650,000원	

비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함.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6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을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원자력발전"으로 한다.

제7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3조 내지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71조(과세대상)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71조(과세대상)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함
제72조(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3. (생략)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5. (생략)	제72조(납세지)..... .... 1.~3. (현행과 같음) 4.〈삭제〉 5. (현행과 같음)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함
제83조(용어의 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시 보호기능에 중점을 둔 일괄포장수단으로 이용되는 일반컨테이너(dry container)외에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 무개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개방컨테이너(flat rack), 탱크컨테이너(tank container)등을 포함한다. 2.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컨테이너 부두 및 일반부두로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3. 환적컨테이너: 입항한 컨테이너 중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및 도내 항구를 경유하여 국내의 다른 항구로 해상운송되는 컨테이너 4. 연안수송컨테이너: 해상을 통해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다만, 국외로부터 입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도내 항구에 최종 입항하거나 도내 항구에서 최초 출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국외로 출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빈컨테이너: 화물이 들어있지 않은 컨테이너 6. 티이유(TEU): 국제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이트(Feet) 규격 컨테이너 1개를 말하며, 10피이트 컨테이너는 0.5티이유, 40피이트 컨테이너는 2티이유, 45피이트 컨테이너는 2.25티이유로 보며, 이외에 특수규격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를 산정한다. 7. 선박회사:「해운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8. 대리점:「해운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자 9. 운임톤수: 1세제곱미터를 1		

톤으로 하는 용적톤수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중량톤수로 구분하며 이 중 큰 수치를 말한다.		
제84조(납세의무자) ① 컨테이너속에 들어 있는 화물의 화주로서 입항화물의 수화주 또는 출항화물의 송화주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화주는 실화주를 대행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입출항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컨테이너화물이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를 통하여 선박회사에 운송의뢰하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는 실화주에 연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된다.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제85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항구에 입출항하는 때에 성립한다. 다만, 실제 입출항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입출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제86조(과세표준 및 세율) 컨테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으로 한다.		규정을 삭제
제87조(세액안분) 한 컨테이너에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의 화물이 들어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은 컨테이너별로 적재된 화물의 운임톤수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제88조(과세면제) 군용 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면제한다.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제89조(징수방법)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제90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회사(외국선사의 경우 지사 또는 대리점을 말한다)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입출항하는 선박에 2개이상의 선박회사의 컨테이너화물이 실려 있을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선박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회사·지사 또는 그 대리점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제91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한 때 2.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의뢰를 받은 때 3. 납세의무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 4. 납세의무자에게 컨테이너화물을 인도한 때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영수내용이 포함된 다른 서식의 영수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제92조(과세통보) 특별징수의무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납세의무성립사실 및 납부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미 지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역개발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과세대상 신고)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받은 자는 선박 입출항일부터 20일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출항일자·선박명·컨테이너 규격별 수량·감면 대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제94조(장부비치 의무 등)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선박명 및 입출항일자 2. 컨테이너 규격별 수량 3. 감면내역 및 증빙자료 4. 화주명단 및 화주별 세액내역 5. 세액징수영수증 사본 ②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확인하거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제95조(납입) 특별징수의무자는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한 세액을 규칙이 정하는 납입서에 의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규정을 삭제
제96조(가산세)①시장·군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할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납세의무자로부터 납기내에 징수한 세액을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입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세액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7조(교부금의 지급) ①도지사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특별징수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제98조(세액의 공제 및 환부) ①특별징수의무자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하여야 한다. 1.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납세의무자가 인수하기 전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 또는 폐기처분된 경우 2.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국고에 귀속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된 경우 3.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국고에 귀속되어 공매처분된 후의 교부액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에 부족한 경우 4.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대상인 컨테이너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5.이미 신고납입한 세액이 초과납입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보통징수) ①특별징수의무자는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세액 및 미징수사유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삭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관련 규정을 삭제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6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중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한다.

제3조제3호중 “입소자 단기 요양보호”를 “입소자 요양보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4.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60세 이상의 자
5. 기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센터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3항에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기준 연령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의 “경상북도지사”를 “도지사”로 하며, 제5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및 감면대상을 우선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3항 중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을 추가하고
“간호사 3”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으로 하고, “생활지도원 20”을
“요양보호사 24”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단, 촉탁의사의 경우는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를 추가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을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로 하고,

제9조2항 중 “각호”를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이용료”를 “입소대

상자 및 배우자의 이용료”로 한다.

제9조제3항에 “제4조제1항제1호, 제4호에 의한 입소대상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를 신설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 중 “노인복지관계법령”을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5조 및「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노인요양시설의……
제3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3. 입소자 단기 요양보호 및 간호·재활 서비스 실시 4~6(생략)	제3조(업무) …… 1~2(현행과 같음) 3. 입소자 요양보호 및 …… 4~6(현행과 같음)
제4조(입소대상) ①센터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활보호대상노인 2.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기타 도지사가 센터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입소대상)**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입소자를 입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실비입소자가 정원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4.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60세 이상의 자 5. 기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센터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삭제) ③제1항제1호내지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기준 연령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운영)** 센터의 운영은 경상북도지사의 명을 받아 센터소장이 관장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인력)**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둔다. ①~②(생략) ③시설종사자의 정원은 간호사 3, 영양사 1, 생활지도원 20, 조리원 2, 위생원 2, 관리인 1, 운전원 1로 한다. ④시설종사자의 복무는「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며,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5조(우선권부여)**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및 감면대상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운영)** ……도지사의…… **제7조(운영인력)(좌동)** ①~②(좌동) ③ ……의사 또는 촉탁의사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 …… , 요양보호사 24…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 단, 촉탁의사의 경우는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설) (생략)	제8조(시설) (좌동)
제8조(이용료) ①이용료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이내로 한다. ②제4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①이용료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 ②제4조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자 및 배우자의 이용료를…… ③제4조제1항제1호, 제4호에 의한 입소대사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신 설>	
제9조(재정) (생략)	제10조(재정) (좌동)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등 일반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
제11조(시행규칙) (생략)	제12조(시행규칙) (좌동)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6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2. “자활지원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를 말한다.
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4. 노인복지계정

제4조(기금의 조성) ①자활계정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출연금
2. 도 이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타 기금의 운용수익금

②장애인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도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노인복지계정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도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④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 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지원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계정을 두어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운용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심의 및 내용) ①자활계정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장애인복지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노인복지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기금 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계정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보건복지여성국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자활지원사업

제10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그 밖의 자활사업의 교육·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11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를 두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8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교육·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6. 시·군

제12조(지원신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와 개인이 자활지원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기관·단체와 개인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임대지원의 경우 임대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1의 비율을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5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용보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한다.

제3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제17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은 이자수입을 감안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한다.

제18조(사업대상) ①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학교장(학·총장)이 추천한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장학생의 선발, 지급인원, 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장 장애인복지사업

제19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사업
2.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3.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4.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사업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6.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장 노인복지사업

제20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사업
2. 노인단체 지원사업
3. 노인사회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사업
4. 노인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5. 노인의 정보화교육사업
6. 노인신문발간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47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조례 제2240호 「경상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경상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경상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애인 및 노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의 장애인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으로 이어 받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의 대여이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6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46-1번지
2.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394-1번지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및 가족상담과 가족관계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종사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복지관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장애예방 및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①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일반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제6조(이용료) ①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다만, 도지사가 계약기간 만료 3월전에 종합평가하여 계속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행정지도)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의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재무·회계)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6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를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실업계 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1의 명칭란 중 “안동농림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를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 농기계공동실습소”로, “경산자동차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자동차공동실습소”를 “경북자동차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자동차공동실습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경상북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경상북도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첨단 기자재의 조작 실습훈련을 통하여 자동화·전문화 되어가는 산업현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1조(목적)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고등학교**----------
제5조 (기능) 실습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첨단 산업 기자재의 조작실습을 통한 산업사회의 적응 능력 배양 2.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에게 첨단 기자재의 조작실습을 통한 교수능력 배양	제5조 (기능) ---------- 1. **전문계고등학교**---------- 2. **전문계고등학교**----------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6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 및 도지사가 각각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의장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3.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교

육청은 업무담당과장, 도는 업무담당팀(과)장이 된다.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6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의소대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읍·면별로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의소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시와 읍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면지역이나 지역실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의소대(여성대 포함)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소방서장은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①의소대의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2. 읍・면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②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 중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

③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 의용소방대 ○○지역대라 한다.

④전문의소대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대의 표지) ①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표지로 한다.

②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도안・기・깃발은 별표 1과 같다.

③대의 표지와 현판의 도안・규격・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임용기준 등) ①의소대・여성대 및 지역대는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5.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②전문의소대는 제1항을 포함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
2.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화공(위험물)분야 등 관련 자격
3. 정보통신분야 자격

4. 사회복지분야 자격
5. 레카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
6. 교수(법학・의학・공학 등), 변호사
7. 소방서장이 기타 소방활동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자

③대원(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 포함)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대원 63세, 대장 및 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은 65세로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①의소대・여성대 및 전문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②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③의소대 및 여성대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대장(의소대장・전문의소대장 및 여성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의소대 또는 지역대는 총무부・방호부・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소화반・구조구급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여성대에는 총무부・홍보부・구호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홍보부에는 예방반・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구호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③전문의소대의 부와 반의 편제는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부와 반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조정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대의 정원) ①시와 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50명 내외로 하고, 여성대의 정원은 40명 내외로 하며, 면지역의 의소대(여성대 포함)는 30명 내외로 한다. 다만, 전문의소대 또는 지역대를 설치하는 경우 정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②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통)단위로 균형 배치토록 선발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용

제10조(대장 및 대원의 임용) ①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한다.

②부장・반장 및 일반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119안전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서장이 임용하고, 전문의소대원은 소방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전문의소대장의 추천에 의해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장 등의 임기) 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의소대 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부장 및 반장도 임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용구비서류) ①의용소방대원의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제5조제2항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전문의소대원에 한한다)

②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4조(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이를 해임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대원의 신분증명) ①소방서장은 대장 및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소방서장은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6조(복무의무) ①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구조·구급 및 기타 재난 등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대원은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③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의소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의 경우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한다.

④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행위) 대원은 각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18조(복제) ①대원의 제복・모자・부착물・부속물・부착물의 위치 등 세부 규격서는 별표 6과 같다.

②단화・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③방수복・방수모・방수화 등 안전장구류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④T셔츠・우의・운동복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형태는 별표 7과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복제 등은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⑧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복무감독)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20조(지도확인) ①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지도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의소대의 운영사항과 제21조의 교육・훈련 실시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확인을 실시한다.

제21조(교육 및 훈련) ①대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에 관련 교육・훈련을 연 24시간이상 받아야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전담의소대는 제외한다.
②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최초 임용 후 1년 이내에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장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제16조제3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 월 1회 4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 경비・보수 및 보상금

제22조(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장학금,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

제23조(출동수당) ①소방 및 기타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 4시간 이상 활동하는 대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

액(다만,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활동보조 등) ①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여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②소방서장은 제16조제3항에 의한 전담의소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군은 관내 의소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요양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치료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장애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8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

제29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 (재해보상 청구) ①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성과중심 보상) ①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의한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운영경비 지원 및 각종 포상기회 차등부여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활동실적관리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소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군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소방서별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도연합회 구성은 시·군·소방서 의소대 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③시·군·소방서 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 대장으로 구성한다.

④도 및 시・군・소방서 연합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연합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연합회의 의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소대 상호간 소방업무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2. 의소대원 복지향상 도모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지원

제33조(연합회 경비지원) ①도는 도연합회와 시·군·소방서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군은 시·군·소방서 연합회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시・군에서 관할 행정구역내의 의소대(여성대・전문의소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소대의 운영사항 지도확인 등 권한일부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대장(지역대장 포함)의 임기는 잔여 기간동안 계속된다.

③(대원의 신분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④(타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중 “소방서·군(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을 “소방서”로 하고 “소방서장·군수(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를 ”소방서장“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4조제3항·제8조제2항 및 제9조 ”소방서장 또는 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소방서와 군(소방서 미관할구역)”을 “소방서”로 한다.

【별표 1】

의용소방대 기(제4조제2항 관련)

(1) 도 안





(2) 기

○ 규격 : 기 …… 가로 110㎝, 세로 75㎝
휘장 …… 가로 65㎝, 세로 31㎝
수실 …… 길이 8㎝

○ 색상 : 바탕 …… 진청색
휘장 …… 황금색
수실 …… 황금색
글씨 …… 은백색

○ 지질 : 우단

○ 휘장은 금사자수로 하되, 윤곽선은 검정색실 처리한다.

(3) 깃 발

○ 규격 : 무궁화깃봉 …… 지름 6㎝
깃대 …… 길이 180㎝, 직경 2.5㎝

○ 재료 : 깃봉 및 깃대 … 철강재 백색도금
받침대 …… 철재

【별표 2】

의용소방대표지(제4조제3항 관련)

(1) 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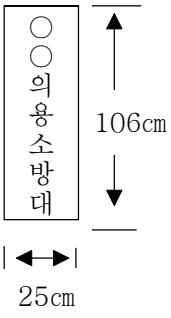
(2) 규 격

- ○ 새매의 크기 : 가로 90㎝, 세로 58㎝
- ○ 횃불의 크기 : 가로 9.3㎝, 세로 14㎝
- ○ 태양의 크기 : 원외경 37㎝
- ○ 소방호스의 길이 : 길이 43㎝

(3) 재 질 : 동판(구리65%+아연35% 내외로 적절히 합금)

현 판

(1) 두께 : 3㎝
(2) 지질 : 목재
(3) 색 : 판 - 담홍색, 글씨 - 흑색



【별표 3】

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8조제1항 관련)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 무 부	서 무 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보 급 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 호 부	소 화 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조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 도 부	예 방 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훈 련 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반	1. 소방대상물 검사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별표 4】

여성대의 업무분장(제8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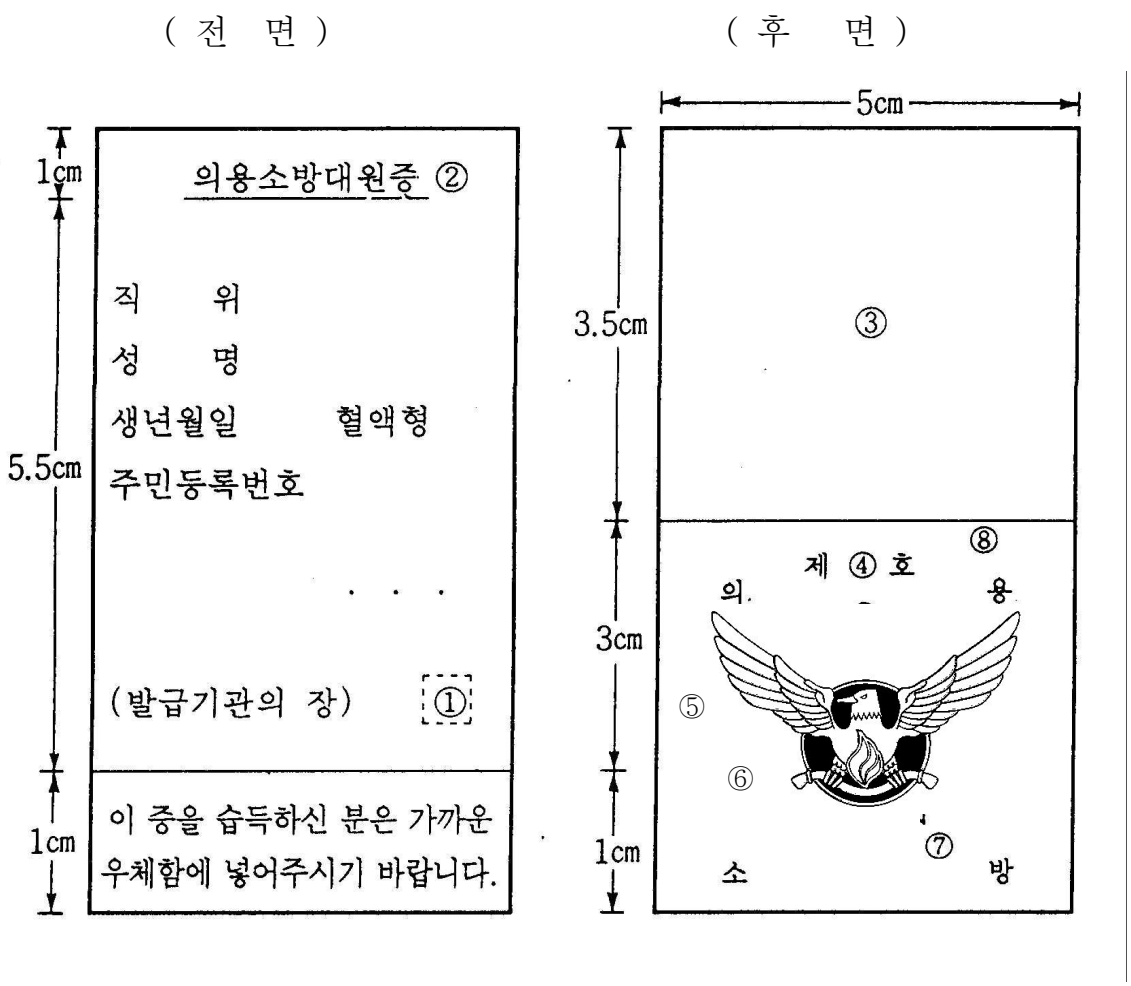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 무 부	서 무 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보 급 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홍 보 부	예 방 반	1. 대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내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홍 보 반	1. 불조심 및 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2.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구 호 부	구 급 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응급조치
	구 호 반	1. 이재민 위안활동 2. 이재민 가료조치

【별표 5】

신분증명서(제15조제1항관련)

구 분	내 용	도 형
지 질	신분증의 용지는백색으로 하고,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제 식	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세로 7.5㎝로 한다. 2. 후면 사진첨부란 밑 전면에 1.5㎜의 엷은 연두색 문자로 “대한민국 의용소방”을 중앙부분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모표”를 인쇄한다. 3. 후면 사진첨부란 밑의 모서리에 녹색으로 “의용소방”을 인쇄한다.(글씨크기 가로 0.8㎝×세로 5㎝×굵기 1㎝) 4.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기는 가로 5㎝×세로 3.5㎝로 한다. 5. 신분증은 피·브이·씨 또는 비닐지로 완전 밀착 포장하여 발급한다.	부 도
관 리	1. 신분증의 분실, 오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 5의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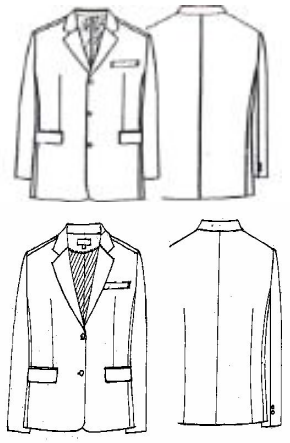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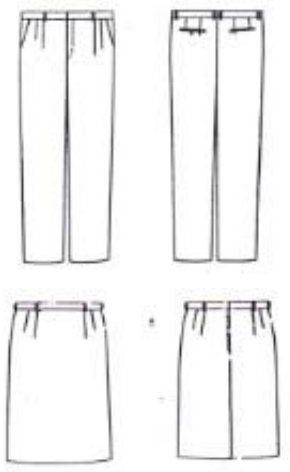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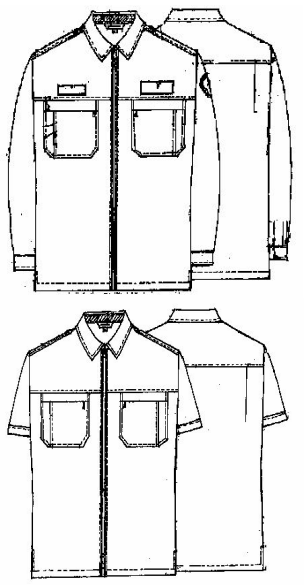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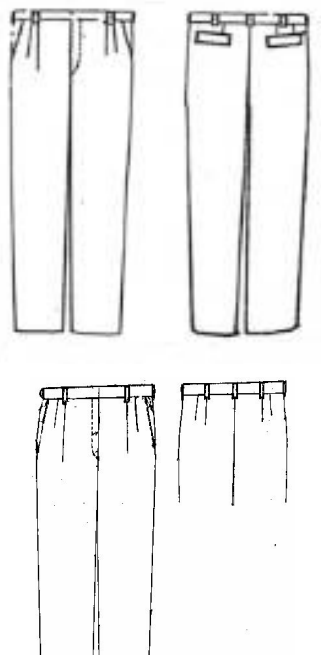
① 발급기관의 장 및 직인
② 계 인
③ 사진(5㎝×3.5㎝)
④ 신분증번호
⑤ 소속(○○의용소방대)
⑥ 성 명
⑦ 발급기관명(소방서단위)
⑧ 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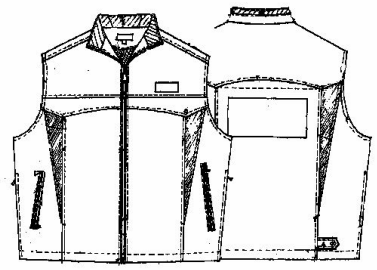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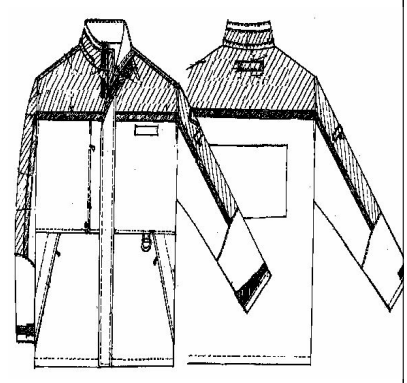
【별표 6】

제복 · 모자 · 부착물 · 부속물 · 부착물의 위치 등 세부규격서(제18조제1항 관련)

Ⅰ. 제복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정복	상의		1. 남자정복은 앞여밈을 3버튼으로 하고, 여자정복은 2버튼으로 한다.(소매단추는 남자 3개, 여자 2개씩으로 한다.) 2. 뒤등판은 트임이 없이 통으로 한다. 3. 남자정복의 흉부 좌우 안쪽에 입술주머니를 낸다. 4. 착용자 좌측 흉부에 하꼬주머니를 내고 허리부분 좌우에 후다주머니를 낸다. 5. 흰색와이셔츠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질 -모든재질 사용가능 【질낮은 P/C(폴리에스테르/면) 제외】 ※예시 P/W 20/80 P/W 40/60 P/W 50/50 -소방방재청 권장재질 P/W 40/60 2. 색상 -청회색 -색도(KS A 0062-2003) : 6.0PB(색상) 2.6(명도)/1.0(채도)
	하의		1. 남자하의는 긴바지 형태로 하고, 여자하의는 스커트형태로 한다. 2. 바지앞면의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옆주머니를 낸다. 3. 바지허리 앞면의 좌우에 주름을 2개씩 잡아준다. 4. 바지뒷면의 좌우 둔부에 입술주머니를 내고 단추를 단다. 5. 스커트는 주름형태의 뒤중앙여밈으로 한다.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기동복	상의		1. 깃은 와이셔츠식(안쪽 배색처리)으로 하며, 여밈은 앞몸판 중앙에 지퍼로 한다. 2. 동복은 긴소매, 하복은 반소매로 하고, 동복의 소매끝은 카우스식으로 하며, 소매 끝에 각각 2개의 단추를 단다. 3. 흉부 좌우에 겉붙임주머니를 달고 주머니윗부분에 지퍼를 달아준다. 4. 몸판 양옆선 아래쪽에 트임을 준다.	1. 재질 -모든재질 사용가능 【질낮은 P/C(폴리에스테르/면) 제외】 ※예시 P/R 65/35 P/W 50/50 P/W 50/50(방염) P/W 10/90(방염) W 100(방염) -소방방재청 권장재질 하 : P/R 65/35 동 : P/W 50/50 2. 색상 ○ 상의 -색상 : 옅은청회색 -색도(KSA0062-2003) : 5.3PB(색상) 5.6(명도)/3.1(채도) ○ 하의 -색상 : 짙은청회색 -색도(KSA0062-2003_ : 7.0PB(색상) 2.8(명도)/1.5(채도) 3. 방염 -방염시는 연소성(KSK0585 : 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거리) 기준을 자체규정하여 시행한다.
	하의		1. 하의는 긴바지 형태로 한다. 2. 바지앞면의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옆주머니를 낸다. 3. 바지허리앞면의 좌우에 주름을 2개씩 잡아준다. 4. 뒷면 좌우 둔부에 각각지퍼형 입술주머니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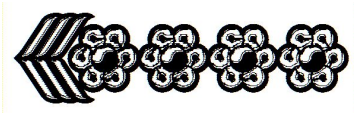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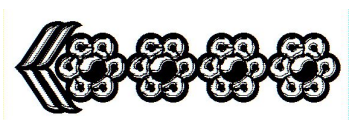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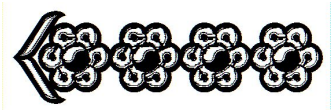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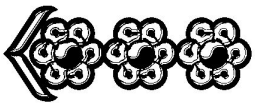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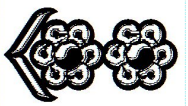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조 끼		1. 깃은 스탠드카라형으로 한다. 2. 여밈은 앞몸판중앙에 지퍼형으로 한다. 3. 아래주머니는 좌우양쪽에 사선으로 지퍼처리한다. 4. 앞뒤 몸판좌우에 반사지로 배색한다. 5. 좌우옆몸판에 지퍼를 달고 메쉬안감처리를 한다. 6. 뒤등판에 은색반사체로“의소대 VOLUNTEER FIRE”를 프린트한다. 7. 안감은 통풍성있게 망사로 한다.	1. 재질 -모든재질 사용가능 【질낮은P/C(폴리에스테르/면) 제외】 ※예시 P 100 P/R 또는 P/W -소방방재청 권장재질 P 100 2. 색상 -겉감 : 진곤색 (색도KSA0062-2003) : 7.2PB(색상) 2.2(명도)/1.6(채도) -배색 : 형광녹색 (색도KSA0062-2003) : 2.3GY(색상) 7.5(명도)/7.3(채도)
방 한 복		1. 깃은 스탠드카라형으로 한다. 2. 여밈은 앞몸판중앙에 지퍼형으로 하며, 지퍼끝까지 바람막이를 달아주고 벨크로테이프로 여밀수 있게 한다. 3. 착용자의 우측흉부에 세로로 주머니를 내어 지퍼처리한다. 4. 아래주머니는 사선으로 내고 지퍼처리한다. 5. 앞몸판과 뒤등판 및 소매끝부분에 반사지로 배색한다. 6. 후드는 탈부착형으로 카라뒤 목선에 지퍼로 연결한다. 7. 내피는 긴소매의 탈부착형태로 한다. 8. 뒤등판에 은색반사체로 “의소대 VOLUNTEER FIRE”를 프린트한다.	1. 재질 -모든재질 사용가능 【질낮은P/C(폴리에스테르/면) 제외】 ※예시 P 100 P/R 또는 P/W -소방방재청 권장재질 P 100 2. 색상 -겉감 : 진곤색 (색도KSA0062-2003) : 7.2PB(색상) 2.2(명도)/1.6(채도) -배색 : 형광녹색 (색도KSA0062-2003) : 2.3GY(색상) 7.5(명도)/7.3(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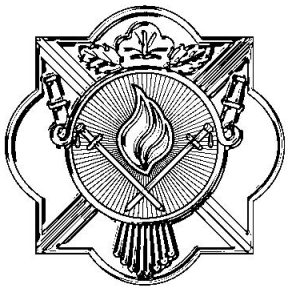
Ⅱ. 모자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남 자 정 모	 1. 의용소방대장 이상  2. 지대장·부대장 	1. 천정비닐호스는 천정 표면이 곡선화 되도록 하고, 이음선은 비닐호스를 사용한다. 2. 모자테의 바깥에는 주름테를 두르고 안쪽에는 비닐 땀받이를 붙인다. 3. 주름테 양쪽에 금색단추를 달고 금선턱끈을 넣는다. 4. 동테상단부위에 원형유지를 위하여 철심을 보강하고 레쟈로 봉합한다. 5. 모자중심선을 기준으로 뒷변은 겉감과 유사한 색상의 망사직으로 한다. 6. 지대장이상 차양의 직위별 월계수 장식은 금색자수로 한다. 가. 의용소방대장이상 월계수잎16매(좌우각 8매) 나. 지대장 월계수잎14매(좌우각 7매)	1. 카바 : 하정복지 겉감용 2. 차양 : 흑색멜톤지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여 자 정 모		1. 모자안 망사심은 원형을 유지하도록 고루 봉제한다. 2. 땀받이는 머리둘레 솔기가 갖추어지게 돌려 박는다. 3. 주름테 양쪽에 귀단추를 달고 금선턱끈을 넣는다. 4. 지대장이상 차양의 월계수 장식은 금속판으로 한다. (월계수잎은 남자정모와 동일)	하정복지 겉감용
기동모		1. 모자 전면 안쪽에 보강재를 접착하여 앞면을 세운다. 2. 천정에 통기용 구멍 4개를 내고 아이렛 처리한다. 3. 차양은 주머니식으로 하며 차양 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2선을 누빈다. 4. 챙길이는 8cm로 한다. 5. 여자의용소방대원 기동모는 남자의 것과 같이한다.	1. 재질 : 하기동복 하의재질 2. 색상 : 하기동복 하의색상

Ⅲ. 부착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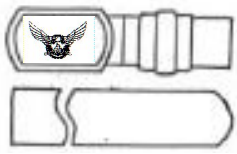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직위표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터빈모양 4개와 새매날개 4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95mm, 세로 25mm로 한다.	1. 금속재의 경우 - 황동판에 니켈금색도금을 하고 새매날개 바탕은 흑색에폭시 처리 2. 자수의 경우 - 전체크기 : 남자(가로 10.5cm, 세로 4.5cm), 여자(가로 8.5cm, 세로 4cm)로 하되, 여자의 경우 가로크기 조정 가능 - 색상 : 바탕은 기동복 하의색상, 직위표장은 황색 비스코스 레이온사(120데니아) - 가공: 배면에 P/C 심지(고밀도)를 접착
	시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터빈모양 4개와 새매날개 3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91mm, 세로 25mm로 한다.	
	시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터빈모양 4개와 새매날개 2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86mm, 세로 25mm로 한다.	
	의용소방대장		터빈모양 4개와 새매날개 1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82mm, 세로 25mm로 한다.	
	지대장 부대장		터빈모양 3개와 새매날개 1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63mm, 세로 25mm로 한다.	
	부장		터빈모양 2개와 새매날개 1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44mm, 세로 25mm로 한다.	
	반장		1. 전체크기 -가로 25mm, 세로 25mm 2. 터빈크기 -외경 19mm의 정육각형 3. 태극문양크기 -지름7mm 4. 측면에 2mm를 띄운 후 폭 4mm 새매날개 1개를 부착한다.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모자 표장	1. 정장  2. 약장 	1. 정모용 -전체크기 : 가로 78mm, 세로 50mm -태양크기 : 원외경 32mm -불꽃크기 : 가로 8mm, 세로 12mm -호스수평길이 : 37mm -단. 여자정모용의 크기는 기동모용과 같다. 2. 기동모용 -전체크기 : 가로 53mm, 세로 35mm -태양크기 : 원외경 22mm -불꽃크기 : 가로 6mm, 세로 9mm -호스수평길이 : 25mm	1. 정장 -황동판에 24k 금도금하고 태양부분은 적색에폭시 처리 2. 약장 -새매와 관창부분은 황색실,태양부분은 적색실의 비스코스레이온사로 하되, 횃불은금사로 자수처리
지휘장		-전체크기 : 가로 53mm, 세로 53mm -원모양크기 : 직경 30mm -불꽃모양크기 : 가로 12mm, 세로 18mm -무궁화꽃모양 : 가로 24mm, 세로 8mm -길이 24mm의 지휘봉 2개 교차	황동판에 24k 금도금

구 분	형 상	제 식	재 질
소 매 표 장		-전체크기 : 가로 97mm, 세로 89mm -리본크기: 수평길이 87mm, 폭10mm -리본안에 “의소대 VOLUNTEER FIRE” 표기 -불꽃크기 : 가로22mm, 세로32mm -불꽃받침대 : 가로 41mm, 세로 29mm - 가로 34mm, 세로 27mm의 해태두상을 불꽃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1. 바탕 : 진청색(곤색)의 옥스퍼드트윌지 2. 비스코스레이온사(120데니아) 로 자수 -백색실: 영문글자 -적색실 : 리본모양 -황색실 : 해태 두상, 횃불, 횃불받침대, 테두리선 -흑색실 : 리본테두리 및 해태, 횃불의 형상표시용
뺏 지		- 태양외경 9mm의 모자 표장 축소판으로 한다.	황동판에 24k 금도금하고, 태양부분은 적색 에폭시 처리
직위표	대 장 (예시)	-전체크기 : 가로 30mm, 세로 15mm -글씨 : 고딕체 -종류: 대장, 부대장, 지대장, 부장, 반장	- 바탕: 적색의 옥스퍼드트윌지 - 글씨: 백색의 비스코스레이온사(120데니아) 로 자수처리 - 테두리 : 진청색(곤색)으로 마감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가슴표장	21년이상 뉴		- 전체크기 : 가로 81mm, 세로 43mm - 불꽃모양 5개 (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81mm, 세로 28mm) - 불꽃크기 : 가로 9mm, 세로 14mm	1. 금속재의 경우 황동판에 24k 금도금 (글씨바탕은 적색 에폭시처리) 2. 자수의 경우 - 와펜 전체크기 : 가로95cm, 세로 50cm - 바탕재질: 기동복상의색상, 조끼, 방한복 색상 - 가공: 배면에 P/C 심지(고밀도)를 접착 -황색실 : 횃불, 새매날개 -적색실 : 글씨바탕 -백색실 : 영문글씨
	15년이상 20년미만 뉴		- 전체크기 : 가로 84mm, 세로 31mm - 불꽃모양 4개 (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84mm, 세로 17mm) -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	
	10년이상 15년미만 뉴		- 전체크기 : 가로 74mm, 세로 31mm - 불꽃모양 3개 (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74mm, 세로 17mm) -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	
	5년이상 10년미만 뉴		- 전체크기 : 가로 70mm, 세로 31mm - 불꽃모양 2개 (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64mm, 세로 17mm) -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	
	입대후 5년미만 뉴		- 전체크기 : 가로 70mm, 세로 31mm ・글씨부분 : 가로 70mm, 세로14mm (글씨는 "VOLUNTEER FIRE"로 표기) - 불꽃모양 1개 (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57mm, 세로 17mm) -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	

Ⅳ. 부속물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넥타이		1. 지퍼식 넥타이로 한다. 2. 겉감과 심의 재단은 정바이어스로 한다. 3. 넥타이무늬는 스트라이프 처리한다.	1. 폴리에스테르원단 선염처리 2. 진회색과 연분홍색 혼합색상
넥타이핀		1. 이중 집게형으로 한다. 2. 모자표장(정장)의 태양부분 원외경 32mm를 12mm로 축소한 모양으로 한다. 3. 핀길이 55mm 핀너비 6mm(3등분) 두께 1.2mm	1.황동판에 24K금도금 2. 태양부분은 적색 에폭시처리(태양원외각부분은 금색)
요대 및 버클		1. 요대는 폭 30mm, 길이 110mm정도로 한다. 2. 버클은 중앙에 모자표장 도안을 삽입한다.	1. 요대는 검정가죽으로 한다. 2. 버클은 검정색 에폭시바탕에 금색테두리, 금색 모자표장으로 한다.
금장단추		1. 크기를 중형(지름21㎜), 소형(지름15㎜)으로 구분 한다. 2. 중앙에 모자표장 도안을 삽입한다. 3. 단추 사용처 -중형 : 정복상의앞 -소형 : 정복견장, 소매	1. 금속재질 2. 바탕은 검정색, 테두리와 모자표장은 금색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이름표	대전 의용소방대장 홍 길 동	1. 전체크기 : 가로 80mm, 세로 25mm(소속 · 직위부분 : 세로 8mm, 이름부분 : 세로 17mm) 2. 글씨체 -정복용 : 고딕체 -기동복용 : 명조체 3. 정복용의 뒷면은 옷핀 형태로 고정	1. 정복용은 필름에 칼라프린팅 후 에폭시 처리 2. 기동복용은 폴리에스테르의 재질로 재직하여 와펜자수처리 3. 색상은 소속 · 직위부분은 적색바탕에 백색글씨, 이름부분은 살구색바탕에 흑색글씨
등판 표시	의 소 대 VOLUNTEER FIRE	1. 조끼의 경우 -글씨전체의 크기 : 가로 200mm, 세로 118mm · 한글 : 세로 58mm · 영문 : 세로 45mm · 한글과 영문글씨의 간격 : 15mm 2. 방한복의 경우 -글씨전체의 크기 : 가로 285mm, 세로 160mm · 한글 : 세로 80mm · 영문 : 세로 60mm · 한글과 영문글씨의 간격 : 20mm	은색 반사체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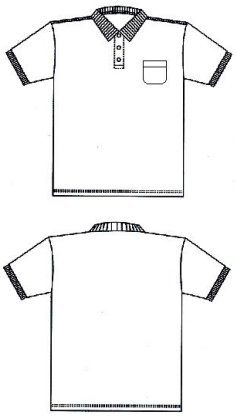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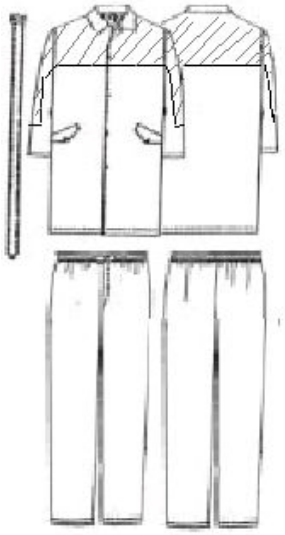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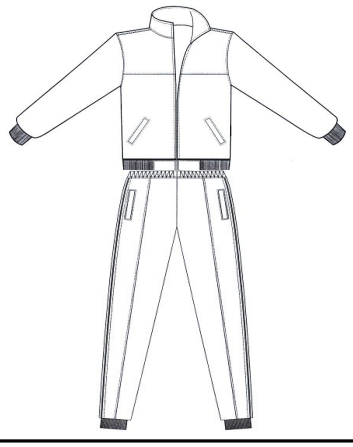
Ⅴ. 제복별 부착물의 부착위치

구분	부착물의 종류	부 착 위 치	비 고
정복	직위표장(금속재)	각 직위표장 중앙이 어깨끝에서 어깨선의 ⅓ 위치가 되도록 부착	나사
	가슴표장(금속재)	앞가슴 좌측 하꼬주머니 상단	나사
	지휘장(금속재)	앞가슴 좌측 하꼬주머니 하단	나사
	이름표(필름재질)	앞가슴 우측(가슴표장과 동일높이)	핀
기동복	직위표장(자수)	견장(길이 11cm, 폭 5cm의 견장지에 자수) 단 여자용은 길이8.5cm, 폭4cm의 견장지에 자수)	와펜
	가슴표장(자수)	앞가슴 좌측 상단절개선 5mm위 중앙	와펜
	이름표(자수)	앞가슴 우측 상단절개선 5mm위 중앙	와펜
	소매표장(자수)	좌측팔 어깨끝에서 6cm아래	와펜
	시・도마크(자수)	우측팔 어깨끝에서 6cm아래	와펜(별도)
조끼	가슴표장(자수)	앞가슴 좌측 상단 절개선 5mm위 중앙	와펜
	직위표(자수)	앞가슴 우측 상단 절개선 5mm위 중앙	와펜
	등판표시(은색반사체)	뒷몸판 중앙절개선 하단 4cm아래	프린트
방한복	가슴표장(자수)	앞가슴 좌측 반사테이프 하단 1cm 중앙	와펜
	직위표(자수)	앞가슴 우측 반사테이프 하단 1cm 중앙	와펜
	소매표장(자수)	좌측팔 어깨끝에서 6cm아래	와펜
	등판표시(은색반사체)	뒷몸판 반사테이프 하단 4cm아래	프린트

※ 비고 : 부착위치의 방향(좌・우측 등)은 착용자 기준이며, “비고란”의 “별도”의 의미는 지급받는 품목을 개별적으로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함

【별표 7】

기타제복(제18조제4항 관련)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T 셔 츠		1.깃은 폴로형 T셔츠 형식으로 한다. 2.흉부좌측에 겉붙임 주머니를 단다. 3.밑단은 편직 처리한다.	1. 재질 -흡한속건(Cool) 기능의 폴리에스테르 재질 2. 색상 -기동복상의 색상과 동일 (옅은 청회색)
우 의		1. 오버코트형태로 한다. 2. 겉감 및 배색,반사테이프의 형태는 방한복에 준하여 제작한다 3. 두건은 코트깃에 스냅으로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4. 허리부분에 벨트고리를 단다. 6. 양쪽주머니는 사선모양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뚜껑이 덮을 수 있도록 한다. 8. 몸판 어깨부분과 소매내피를 망사처리한다.	1. 재질 -방수,투습기능의 폴리에스테르 재질 2. 색상 -방한복 동일 (몸판-진곤색 배색-형광녹색)
운 동 복		1. 상의 깃은 나비깃으로 한다. 2. 지퍼는 깃끝까지 달아야한다. 3. 하의 허리단에는 고무밴드를 넣고 보조용 면끈을 넣는다.	1. 재질 -시중 일반재질 2. 색상 -지방자치단체 자체 결정

【별표 8】

의용소방대원 복제지급 품목표(제18조제7항 관련)

종 류			수 량	사용기간	지급대상	비 고
제복	정복	동복	1	3	지대장이상	
		하복	1	3	지대장이상	
	기동복	동복	1	2	전의용소방대원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이내에 지급
		하복	1	2	전의용소방대원	
	조 끼		1	2	전의용소방대원	
	방한복		1	3	전의용소방대원	
모자	정 모		1	3	지대장이상	
	기동모		1	2	전의용소방대원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이내에 지급
단 화			1	2	전의용소방대원	
기동화			1	3	전의용소방대원	

【별표 9】

신체장애 등급표 및 신체등급별 장애보상(제27조제2항 관련)

I. 신체장애 등급표

등 급	신 체 장 애
1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2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팔을 팔굽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한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손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등 급	신 체 장 애
3	6. 한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한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10.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11.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4	1. 한눈이 실명(맹·광각상실)되거나 또는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 2. 두귀의 청력이 40㎝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다리가 5㎝이상 짧아진 사람 8. 한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13.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14. 두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등 급	신 체 장 애
5	1.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두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8.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네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12. 한다리가 3㎝이상 짧아진 사람 13.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6	1. 한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

등 급	신 체 장 애
6	5. 한귀의 청력이 4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9. 8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발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7.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21. 기타 제1급 내지 제6급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14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사람

II. 신체등급별 장애보상

등 급	보 상 금
1 급	사망보상금의 100/100
2 급	사망보상금의 88/100
3 급	사망보상금의 76/100
4 급	사망보상금의 64/100
5 급	사망보상금의 52/100
6 급	사망보상금의 40/100

【별지 제1호 서식】

입대원서(제13조제2항 관련)

입 대 원 서

주 소

성 명 (성별) 남·녀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위 본인은 ○○소방서 ○○ 의용소방대원으로

복무하고자 입대를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

추 천 인	직 성명 ㊞

귀하

(신문용지 190㎝×268㎝)

【별지 제2호 서식】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제15조제2항 관련)

결 재			발행번호	사진	발행일자 회수일자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수령인 (인장)

【별지 제3호 서식】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제15조제3항 관련)

<table>
<tr><td rowspan="2">인적사항</td><td rowspan="2">성 명</td><td>한 글</td><td></td><td rowspan="2">주민등록
번 호</td><td rowspan="2"></td></tr>
<tr><td>한 자</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7">경
력
사
항</td><td colspan="2">근 무 기 간</td><td rowspan="2">근 무 처</td><td rowspan="2">소 속</td><td rowspan="2">직 책</td></tr>
<tr><td>부 터</td><td>까 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근무년한</td><td colspan="2">년 월</td><td>최 종 직 책</td><td colspan="2"></td></tr>
</table>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별지 제4호 서식】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 발급대장(제15조제3항 관련)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소 속	성 명	주 소	생년 월일	재직 기간 (년월)	용 도	통수	취급자 (인)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요양보상 청구서(제30조제1항 관련)

1. 소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상병의 부위와 정도
4. 상병의 결과
5. 요양의 내용
6. 소요요양비 내용 합계 원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원 또는 진료소 명칭

직 성명 (인)

---

1.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2. 상병명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인)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장애보상 청구서(제30조제1항 관련)

1. 소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4.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5. 장애의 정도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원 또는 진료소 명칭

직　　성명　　인

---

1. 장애발생년월일
2. 장애명
3. 청구금액 및 장애등급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인)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장제보상 청구서(제30조제1항 관련)

1. 소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4. 사망년월일
5. 장제보상청구금액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인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및 사망자와의 관계

성명 인

소방서장 귀하

※ 1. 유족이 청구할 때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장제를 행한 자가 청구할 때에는 장제사실의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유족보상 청구서(제30조제1항 관련)

1. 소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4. 사망년월일
5. 사망장소
6. 사망경위
7. 유족보상금 청구금액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성 명 인

위 상위없음을 확인.

년 월 일

대장 인

소방서장 귀하

※ 1. 사망진단서·유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사실혼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6월 3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검토·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정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2.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자문
3. 도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4.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검토·자문
5. 경상북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대안제시 등 정책의 연구
6.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검토 및 시행중인 사업의 학술연구 및 자문
7.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각 1인
2. 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각1인

3.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2인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채택된 의안의 제출)
①위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출된 의안 중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해당의원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③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들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내에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둔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에 의거 위촉된 자문교수는 이 조례에 의거 의정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의회자문교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정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검토·자문..... ....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기능) (현행과 같음)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심의	1. ....검토 · 자문
2.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2. ..... 자문
3. 도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 검토 · 자문
4. 주요시책사업의 분석 ·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4. ....검토 · 자문
5. 경상북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대안제시 등 정책의 연구	5. (현행과 같음)
6.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검토 및 시행중인 사업의 분석·평가	6. ....학술연구 및 자문
7.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7. (현행과 같음)

현행	수정안
제3조 －제7조 (생략)	제3조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 (채택된 의안의 제출) ①위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삽입)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의장은 제출된 의안 중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해당의원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권고한다.	제8조 (채택된 의안의 제출) ①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 회부할 수 있다.
제9조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내에 의정연구실을 둔다.	제11조 (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둔다.
제12조－제13조 (생략)	제12조－제13조 (현행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현행과 같음)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8. 6.30(월)

- 2008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경 상 북 도 의 회

목 차

1. 소관부서 ····· 2

2. 제안이유 ····· 2

3. 심사경과 ····· 2

4. 편성방향 ····· 3

5. 예산(안) ····· 4

6. 심사의견 ····· 17

7. 질의 및 답변 요지 ····· 29

8. 토론요지 ····· 29

9. 심사결과 ····· 29

10. 소수의견 요지 ····· 29

11. 기타 필요한 사항 ····· 29

※ 예산(안) 조정조서 ····· 30

- 2008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3.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 10.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8. 6. 25.

다. 상정일자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 6.26 : 상정・질의)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6.27 : 상정・질의・토론・의결)

4. 편성방향

○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의 추경예산 편성

○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정리

○ 법정필수경비 부족분과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 취약계층 지원, 고유가 안정대책,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등

【 추가경정예산 주요재원 】

○ **합 계**	**3,962 억원**
• 세 외 수 입	2,054 〃
• 지방교부세	1,594 〃
• 보 조 금	337 〃
• 특 별 회 계	-23 〃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계	**4,552,976**	**100.0**	**4,156,784**	**100.0**	**396,192**	**9.5**
일 반 회 계	**3,828,738**	**84.1**	**3,430,200**	**82.5**	**398,538**	**11.6**
특 별 회 계	**724,238**	**15.9**	**726,584**	**17.5**	**-2,346**	**-0.3**
의료급여기금운영	368,964	8.1	380,139	9.1	-11,175	-2.9
치 수 사 업	30,208	0.7	24,207	0.6	6,001	24.8
경 도 대 학 운 영	8,240	0.2	7,812	0.2	428	5.5
광 역 교 통 시 설	7,619	0.2	7,571	0.2	48	0.6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2,552	1.2	50,200	1.2	2,352	4.7
지역개발기금운영	256,655	5.6	256,655	6.2	-	-

2)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552,976**	**100.0**	**4,156,784**	**100.0**	**396,192**	**9.5**
자 체 수 입	1,311,966	28.8	1,099,941	26.5	212,025	19.3
지방세 수입	730,000	16.0	730,000	17.6	-	0.0
세 외 수 입	581,966	12.8	369,941	8.9	212,025	57.3
경상적수입	66,460	1.5	66,100	1.6	360	0.5
임시적수입	515,506	11.3	303,841	7.3	211,665	70.0
의 존 수 입	3,241,010	71.2	3,056,843	73.5	184,167	6.0
지방교부세	882,012	19.4	722,600	17.4	159,412	22.1
국고보조금	2,220,998	48.8	2,196,243	52.8	24,755	1.1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138,000	3.0	138,000	3.3	-	-
국내차입금	138,000	3.0	138,000	3.3	-	-

3) 세출예산

가) 분 야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552,976**	**100.0**	**4,156,784**	**100.0**	**396,192**	**9.5**
일반공공행정	882,420	19.4	708,478	17.1	173,942	24.6
공공질서및안전	184,703	4.1	168,457	4.1	16,246	9.6
교 육	7,939	0.2	7,593	0.2	346	4.6
문화및관광	219,325	4.8	179,940	4.3	39,385	21.9
환 경 보 호	298,631	6.6	295,786	7.1	2,845	1.0
사 회 복 지	1,220,088	26.8	1,215,642	29.2	4,446	0.4
보 건	56,770	1.2	46,281	1.1	10,489	22.7
농림해양수산	720,341	15.8	693,485	16.7	26,856	3.9
산업중소기업	127,345	2.8	109,128	2.6	18,217	16.7
수송및교통	291,964	6.4	219,887	5.3	72,077	32.8
국토및지역개발	205,521	4.5	182,593	4.4	22,928	12.6
과 학 기 술	23,842	0.5	20,967	0.5	2,875	13.7
예 비 비	42,000	0.9	42,000	1.0	0	-
기 타	272,087	6.0	266,547	6.4	5,540	2.1

나) 조 직 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552,976**	**100.0**	**4,156,784**	**100.0**	**396,192**	**9.5**
의회사무처	11,711	0.3	11,458	0.3	253	2.2
공보관실	1,938	0.0	1,365	0.0	573	42.0
새경북기획단	18,595	0.4	16,459	0.4	2,136	13.0
기획조정본부	581,877	12.8	478,899	11.5	102,978	21.5
경제과학진흥본부	157,732	3.5	136,510	3.3	21,222	15.5
공무원교육원	5,541	0.1	4,452	0.1	1,089	24.5
감사관실	385	0.0	385	0.0	-	-
보건복지여성국	1,264,556	27.8	1,253,899	30.1	10,657	0.8
행정지원국	420,010	9.2	347,802	8.4	72,208	20.8
경도대학	8,240	0.2	7,812	0.2	428	5.5
환경해양산림국	469,203	10.3	468,483	11.3	720	0.2
보건환경연구원	8,110	0.2	7,574	0.2	536	7.1
농수산국	539,547	11.9	514,185	12.4	25,362	4.9
농업기술원	43,188	0.9	41,765	1.0	1,423	3.4
투자통상본부	37,256	0.8	29,947	0.7	7,309	24.4
관광산업진흥본부	26,313	0.6	21,528	0.5	4,785	22.2
문화체육국	176,944	3.9	144,101	3.5	32,843	22.8
건설도시방재국	615,693	13.5	515,167	12.4	100,526	19.5
소방본부	166,137	3.6	154,993	3.7	11,144	7.2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828,738**	**100.0**	**3,430,200**	**100.0**	**398,538**	**11.6**
지 방 세 수 입	730,000	19.1	730,000	21.2	-	-
세 외 수 입	301,428	7.9	95,997	2.8	205,431	214
경상적수입	24,816	0.6	24,381	0.7	435	1.8
임시적수입	276,612	7.2	71,616	2.1	204,996	286
지 방 교 부 세	882,012	23.0	722,600	21.1	159,412	22.1
국 고 보 조 금	1,915,298	50.0	1,881,603	54.9	33,695	1.8

2) 세출예산

가) 분야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828,738**	**100.0**	**3,430,200**	**100.0**	**398,538**	**11.6**
일반공공행정	625,765	16.3	451,823	13.2	173,942	38.5
공공질서및안전	184,702	4.8	168,457	4.9	16,245	9.6
교 육	3,813	0.1	3,829	0.1	-16	-0.4
문화및관광	219,325	5.7	179,940	5.2	39,385	21.9
환 경 보 호	298,631	7.8	295,786	8.6	2,845	1.0
사 회 복 지	851,124	22.2	835,503	24.4	15,621	1.9
보 건	56,770	1.5	46,281	1.3	10,489	22.7
농림해양수산	720,341	18.8	693,485	20.2	26,856	3.9
산업중소기업	74,793	2.0	58,928	1.7	15,865	26.9
수송및교통	284,345	7.4	212,316	6.2	72,029	33.9
국토및지역개발	175,313	4.6	158,386	4.6	16,927	10.7
과 학 기 술	23,842	0.6	20,967	0.6	2,875	13.7
예 비 비	42,000	1.1	42,000	1.2	-	-
기 타	267,974	7.0	262,499	7.7	5,475	2.1

나) 조직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828,738**	**100.0**	**3,430,200**	**100.0**	**398,538**	**11.6**
의회사무처	11,711	0.3	11,458	0.3	253	2.2
공보관실	1,938	0.1	1,365	0.0	573	42.0
새경북기획단	18,595	0.5	16,459	0.5	2,136	13.0
기획조정본부	325,222	8.5	222,244	6.5	102,978	46.3
경제과학진흥본부	105,180	2.7	86,310	2.5	18,870	21.9
공무원교육원	5,541	0.1	4,452	0.1	1,089	24.5
감사관실	385	0.0	385	0.0	-	-
보건복지여성국	895,592	23.4	873,759	25.6	21,833	2.5
행정지원국	420,010	11.0	347,802	10.1	72,208	20.8
환경해양산림국	469,203	12.3	468,483	13.7	720	0.2
보건환경연구원	8,110	0.2	7,574	0.2	536	7.1
농수산국	539,547	14.1	514,185	15.0	25,362	4.9
농업기술원	43,188	1.1	41,765	1.2	1,423	3.4
투자통상본부	37,256	1.0	29,947	0.9	7,309	24.4
관광산업진흥본부	26,313	0.7	21,528	0.6	4,785	22.2
문화체육국	176,944	4.6	144,102	4.2	32,842	22.8
건설도시방재국	577,866	15.1	483,389	14.1	94,477	19.5
소방본부	166,137	4.3	154,993	4.5	11,144	7.2

다) 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828,738**	**100.0**	**3,430,200**	**100.0**	**398,538**	**11.6**
인 건 비	209,652	5.5	207,796	6.1	1,856	0.9
물 건 비	100,956	2.6	89,934	2.6	11,022	12.3
경 상 이 전	1,415,643	37.0	1,308,604	38.1	107,039	8.2
자 본 지 출	1,650,251	43.1	1,482,386	43.3	167,865	11.3
융 자 및 출 자	8,064	0.2	6,000	0.2	2,064	34.4
보 전 재 원	53,230	1.4	25,230	0.7	28,000	111.0
내 부 거 래	346,280	9.0	268,250	7.8	78,030	29.1
예비비 및 기타	44,662	1.2	42,000	1.2	2,662	6.3

다. 특별회계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24,238**	**100.0**	**726,584**	**100.0**	**-2,346**	**-0.3**
의료급여기금운영	368,964	50.9	380,139	52.3	-11,175	-2.9
치 수 사 업	30,208	4.2	24,207	3.3	6,001	24.8
경도대학운영	8,240	1.1	7,812	1.1	428	5.5
광역교통시설	7,619	1.1	7,571	1.0	48	0.6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2,552	7.3	50,200	7.0	2,352	4.7
지역개발기금운영	256,655	35.4	256,655	35.3	-	-

2)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24,238**	**100.0**	**726,584**	**100.0**	**-2,346**	**-0.3**
세 외 수 입	280,538	38.7	273,944	37.7	6,594	2.4
경상적 수입	41,644	5.8	41,719	5.7	-75	-0.2
임시적 수입	238,894	33.0	232,225	32.0	6,669	2.9
국고보조금	305,700	42.2	314,640	43.3	-8,940	-2.8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138,000	19.1	138,000	19.0	-	-
국내차입금	138,000	19.1	138,000	19.0	-	-

3)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 분야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24,238**	**100.0**	**726,584**	**100.0**	**-2,346**	**-0.3**
일반공공행정	256,655	35.4	256,655	35.4	-	-
교 육	4,127	0.5	3,764	0.5	363	9.6
사 회 복 지	368,964	50.9	380,139	52.3	-11,175	-2.9
산업중소기업	52,552	7.3	50,200	6.9	2,352	4.7
수 송 및 교 통	7,619	1.1	7,571	1.0	48	0.6
국토및지역개발	30,208	4.2	24,207	3.3	6,001	24.8
기 타	4,113	0.6	4,048	0.6	65	1.6

나) 조직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24,238**	**100.0**	**726,584**	**100.0**	**-2,346**	**-0.3**
기획조정본부	256,655	35.4	256,655	35.3	-	-
예 산 팀	256,655	35.4	256,655	35.3	-	-
경제과학진흥본부	52,552	7.3	50,200	7.0	2,352	4.7
과학기술진흥팀	52,552	7.3	50,200	7.0	2,352	4.7
보건복지여성국	368,964	50.9	380,139	52.3	-11,175	-2.9
사회복지과	368,964	50.9	380,139	52.3	-11,175	-2.9
건설도시방재국	37,827	5.3	31,778	4.3	6,049	19.0
균형개발과	7,619	1.1	7,571	1.0	48	0.6
치수방재과	30,208	4.2	24,207	3.3	6,001	24.8
경 북 도 립 대 학	8,240	1.1	7,812	1.1	428	5.5

다) 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24,238**	**100.0**	**726,584**	**100.0**	**-2,346**	**-0.3**
인 건 비	2,996	0.4	2,996	0.4	-	-
물 건 비	4,072	0.6	3,527	0.5	545	15.5
경 상 이 전	428,512	59.2	437,206	60.2	-8,694	-2.0
자 본 지 출	56,570	7.8	50,968	7.0	5,602	11.0
융 자 및 출 자	112,000	15.5	112,000	15.4	-	-
보 전 재 원	116,170	16.0	116,170	16.0	-	-
내 부 거 래		-		-	-	
예비비 및 기타	3,918	0.5	3,717	0.5	201	5.4

6. 심사의견(전문위원 주근호)

가. 총 괄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1,568억원 보다 3,962억원(9.5%)이 증액된 총 4조 5,530억원임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3조 4,302억원 보다 3,985억원(11.6%)이 증액된 3조 8,287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65억원 보다 23억원(-0.3%)이 감액된 7,242억원임

【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감	비율
합 계	4,552,976	100.0	4,156,784	100.0	396,192	9.5
일반회계	3,828,738	84.1	3,430,200	82.5	398,538	11.6
특별회계	724,238	15.9	726,584	17.5	-2,346	-0.3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 세입예산 】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 총규모는 3,985억 38백만원으로서 재원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부문에서는 증감액이 없으며
- 세외수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004억원, 이월금 26억 46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6억 1백만원, 수수료수입 2억 89백만원 등 총 2,054억 31백만원임
- 지방교부세 1,594억 12백만원
- 국고보조금 336억 9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 】

○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 18억 56백만원
-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 110억 22백만원
- 포상금, 출연금, 민간 및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1,070억 39백만원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 및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 취득비 등 자본지출 1,678억 65백만원

- 융자 및 출자 20억 64백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280억원, 내부거래 780억 30백만원, 반환금 및 기타 26억 62백만원임

○ **부문별로 살펴보면**

- 도로·교통체계 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재난예방 등 지역균형개발 부문 1,080억원

- 문화재보수 및 문화기반조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문화관광진흥 부문 394억원

- FTA대비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등 농수산 부문 269억원

- 저소득층 지원, 노인·취약계층 복지시설 건립 등 사회복지 및 서민생활안정 부문 261억원

- 고유가 안정대책,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기반조성 등 지역경제 부문 187억원

-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공무원 역량강화, 시군·교육청 재정지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1,794억원을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

○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265억 84백만원보다 23억 46백만원(-0.3%)이 감액된 7,242억 38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01억 39백만원 보다 111억 75백만원(-2.9%)이 감액된 총 3,689억 64백만원으로

-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 순세계잉여금 2억 16백만원을 증액하고
  - 의료급여사업 도비부담금 16억 25백만원, 의료급여사업 시군비부담금 8억 26백만원, 의료급여사업비(국고보조금) 89억 40백만원이 감액 되었음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 의료급여진료현금급여 4억 73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비 32백만원을 증액하고
  - 의료급여진료비(민간위탁금) 116억 80백만원을 감액하였음. 이는 일부사업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도비를 감액한 것임

【 치수사업 특별회계 】

-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2억 7백만원 보다 60억 1백만원(24.8%)이 증액된 총 302억 8백만원으로

-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 폐천부지매각대 5억원을 감액하고
  - 순세계잉여금 40억 1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5억원이 증액됨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 하천편입토지보상 50백만원을 감액하고
  - 하천기본계획수립 16억 32백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17억 68백만원, 일반하천개보수 25억원, 예비비 1억 51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경도대학운영 특별회계 】

-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8억 12백만원 보다 4억 28백만원(5.5%)이 증액된 총 82억 40백만원으로

-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 입학금 및 수업료 75백만원을 감액하고
  - 순세계 잉여금 51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50백만원, 위약금 2백만원 등을 증액하였음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 신입생 모집 요강 및 광고료, 통학버스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45백만원,

    출연금(학교기업운영지원) 2억원, 냉난방기구입 60백만원, 예비비 등 23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5억원 71백만원 보다 48백만원(0.6%)이 증액된 총 76억 19백만원으로
- 순세계잉여금 48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음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

-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02억원보다 23억 52백만원(4.7%)이 증액된 총 525억 52백만원으로
-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 '07년도 이월사업비 전액 150억원을 감액하고
  - 순세계 잉여금 173억 52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 고유가대비 저소득층 에너지관련 지원사업 10억원, DGIST경북에너지기술사업단 설립지원 3억원,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수립 3억원, 국제에너지 환경네트워크구축 2억원 등 23억 52백만원임

다.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7조에 의해 2006년에 설치되었으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2008년도말 현재액은 당초금액 786억 60백만원 보다 1억 72백만원이 증액된 788억 3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예산액은 324억 6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6백만원 보다 210억 5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210억 54백만원에 대한 수입내역을 보면
  이자수입 과목경정 3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0백만원, 일반회계예탁금 원금상환금 200억원, 예치금회수 12억 2백만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예탁금이자 2억 50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10억 54백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금고예치금 201억 72백만원, 타기금예수금 원금상환 6백만원, 타기금예수금 이자상환 8억 76백만원임

○ 기정예산액 114억 6백만원보다 금회에 210억 54백만원(184.6%)이나 증가한 주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율이 3.5%인 일반회계 예탁금원금 200억원이 상환되었기 때문임

라. 종합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최근 경제는 고유가로 인한 국내물가 불안, 소비둔화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 경기 또한 침체되어 지방세수 전망은 밝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수입을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지방세의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보면 2007년 1,140억원, 2006년 1,131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이와 같이 예년 초과수입금의 예로 보아 지방세 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 시급한 사업을 지연 시키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959억 97백만원 보다 2,054억 31백만원(214%)이 증액된 3,014억 28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4억원,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억 46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6억 1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음

○ 2007년도말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500억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2004억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재원 3,985억 38백만원의 50.3%를 차지하고 있음

○ 가용재원은 본예산 위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에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월사업을 다수 발생케 하는 등의 우려가 있으며, 도표에서 보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연도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금 액	18,805	72,098	164,734	200,400

○ 지방교부세는 1,594억 12백만원으로 '07년도 내국세 정산분 718억원, '08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 추가분 738억원 등임

○ 국고보조금은 336억 95백만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98억 10백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4억 34백만원, 농촌활력 증진사업 29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7억 82백만원 등임

나. 세출예산

○ 금회 추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85억원으로 중앙지원 사업비 540억원, 법정·의무적 경비 1,709억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1,736억원 규모임

○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체계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 부문 1,080억원, 문화관광 부문 394억원, 농수산 부문 269억원, 사회복지 및 서민생활안정 부문 261억원, 지역경제 부문 187억원, 일반행정 부문 1,794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균형개발 부문과 지역경제 부문에 추경재원 3,985억원의 31.8%를 편성 하였음

○ 성질별로는 인건비 0.9%,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연구개발비 등 물건비가 12.3%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물건비의 경우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형편에 맞게 골고루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며

○ 포상금·출연금 등 경상이전은 1,070억 39백만원(8.2%), 시설비·민간 및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은 1,678억 65백만원(11.3%)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기반 조성 등의 사업이 내실 있고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소득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할 것임

○ 지방채상환 280억원(111%),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7억 50백만원(806%)을 증액편성하여 부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이자 절감분을 신규사업에 투자 가능하도록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동명-부계간 도로 95억원, 청도-경산 도로개설 50억원 등의 사업에 조기보상 및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비절감 효과도 나타내고 있음

○ 이밖에 시군 재정지원 537억원, 교육청 지원경비 532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 연구용역비, 실시설계비, 민간 및 자치단체 보조, 사무관리비 등의 사업비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 심포지엄 개최 등 회의경비, 홍보비, 재단이나 단체 운영비 지원,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국외여행비 등은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여 지원하고, 단순한 소모성 경비가 되지 않고 사업이 지향하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독도지원 관련사업은 해양정책과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산림과에서도 일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상호연계하여 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의료급여기금·치수사업·경도대학운영·광역교통시설·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등 5개 특별회계가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 일부 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금회 추경에 재편성 요구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의 경우 설치된 기간이 짧아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며, 세입에 대한 철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 취지에 맞도록 지역개발을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조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23건	3,292,000	
30	새 경 북 기 획 단	영어체험학습운영지원	300,000	
87	경제과학진흥본부	방폐장유치지역지원(양성자가속기지원 등)	1,000,000	
132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모금회 경북지회 운영지원	30,000	
135	보건복지여성국	특수임무수행자회 경북지부사무실 임차료 지원	30,000	
143	보건복지여성국	경북여성상 정립 및 선양사업	20,000	
154	보건복지여성국	도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10,000	
206	행 정 지 원 국	지역오피니언리더 네트워크 구축운영	30,000	
250	환경해양산림국	도립공원기반시설(주차장) 조성	50,000	
250	환경해양산림국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	50,000	
331	농 수 산 국	친환경쌀 도정시설 설치	30,000	
334	농 수 산 국	석회 유황 합제제 조기 공급	9,000	
346	농 수 산 국	축산물 유통타운 조성	300,000	
401	농 업 기 술 원	축산생산비절감 시범단지 조성	60,000	
402	농 업 기 술 원	2008 전국인삼요리품평회 및 경연대회 지원	30,000	
404	농 업 기 술 원	사이버 농업인지원	45,000	
428	투 자 통 상 본 부	전략산업 타깃기업발굴 컨설팅	20,000	
438	투 자 통 상 본 부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50,000	
482	문 화 체 육 국	문경 대왕세종 촬영장보호 및 체험시설 설치	100,000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573	소 방 본 부	제철119안전센터이전 신축(실시설계비)	32,000	
573	소 방 본 부	제철119안전센터이전 신축(시설비)	1,048,000	
573	소 방 본 부	제철119안전센터이전 신축(감리비)	13,000	
573	소 방 본 부	제철119안전센터이전 신축(시설부대비)	7,000	
584	소 방 본 부	용상119안전센터담장등 보수공사	28,00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9건	2,312,000	
16	의 회 사 무 처	초과근무수당	45,853	
148	보건복지여성국	보육정보센터프로그램 운영비	10,000	
252	환경해양산림국	경북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100,000	
345	농 수 산 국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369,000	
400	농 업 기 술 원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13,200	
403	농 업 기 술 원	농심나눔쉼터	100,800	
403	농 업 기 술 원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21,000	
433	투 자 통 상 본 부	노사합동 우수기업 해외벤치마킹	20,000	
553	소 방 본 부	소방장비 보강	600,000	
	기 획 조 정 본 부	예비비	1,032,147	

【부기신설】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5건	**980,000**	
	경제과학진흥본부	공모과제사업 시스템 구축	400,000	
	보건복지여성국	보훈단체 특화사업 지원	30,000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50,000	
	문 화 체 육 국	영주마당놀이 테마공연장 조성	250,000	
	문 화 체 육 국	포항미술관 건립	250,000	

【과목변경】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예산액	비 고
계		1건	**1,000,000**	
30	새 경 북 기 획 단	당초 : 영어체험학습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변경 : 영어체험학습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0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8. 6. 30(월)

2008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경 상 북 도 의 회

목 차

Ⅰ. 소관부서 ····· 3

Ⅱ. 심사경과 ····· 3

Ⅲ. 제안설명의 요지 ····· 3

Ⅳ.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 3

1. 총 규 모 ····· 4

2. 세입예산 ····· 4

3. 세출예산 ····· 8

Ⅴ. 종합 검토의견 ····· 15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21

Ⅶ. 토론요지 ····· 21

Ⅷ. 심사결과 ····· 21

Ⅸ. 소수의견의 요지 ····· 21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21

2008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Ⅰ. 소관부서 : 경상북도 교육청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10, 경상북도교육감
2. 회부일자 : 2007. 6. 25
3.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 6. 26 : 상정・질의)
   -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 6. 27 : 토론・의결)

Ⅲ.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예병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Ⅳ.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1. 총규모

□ 200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6%에 해당하는 2,991억 7백만원이 증액된 2조 6,762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

- 예 산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A - B	증감율(%)
세입·세출	2,676,254	2,377,147	299,107	12.6

2.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991억 7백만원이 증액된 2조 6,762억 5천 4백만원으로

○ 이전수입은

• 기정예산 2조 3,000억 8천 8백만원보다 1,999억 6천 2백만(8.7%)이 증액된 2조 5,000억 5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보통교부금 2,099억 7천 8백만원, 특별교부금 체육예술교과내실화 18억 5천만원 등 8건 69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178억 7천 1백만원, 시도세전입금 47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46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타 이전수입에서 천국소년체육대회참가경비 3억 6천 3백만원 등 13건 10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 총 505억 3천 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9%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420억 5천 9백만원보다 84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입학금,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 13억 3천 9백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인 행정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3백만원, 자산임대 및 자산매각대인 자산수입 67억 4천 1백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 잡수입 3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차입은

-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위한 지방교육채 289억 2천 8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 기타수입은

- 기정예산 3천 5백억원보다 617억 4천만원(176.4%)이 증액된 967억 4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순세계잉여금 617억 3천 9백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장 관 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2,676,254	100.0	2,377,147	100.0	299,107	12.6
이전수입	소 계	2,500,050	93.4	2,300,088	96.7	199,962	8.7
	중앙정부이전수입	2,292,944	85.7	2,076,023	87.3	216,921	10.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5,037	9.6	223,053	9.4	△18,016	△8.1
	기타이전수입	2,069	0.1	1,012	0.0	1,057	104.5
자체수입	소 계	50,534	1.9	42,059	1.8	8,475	20.2
	교수-학습활동수입	29,468	1.1	28,129	1.2	1,339	4.8
	행정활동수입	245	0.0	242	0.0	3	1.3
	자 산 수 입	10,001	0.4	3,260	0.1	6,741	206.8
	이 자 수 입	10,110	0.4	10,109	0.4	1	0.0
	잡 수 입	710	0.0	319	0.0	391	122.6
차입	소 계	28,928	1.1	0	0.0	28,928	-
	지방교육채및학교채	28,928	1.1	0	0.0	28,928	-
기타	소 계	96,740	3.6	35,000	1.5	61,740	176.4
	전년도이월금	96,740	3.6	35,000	1.5	61,740	176.4

3.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6%인 2,991억 7백만원이 증액된 2조 6,762억 5천 4백만원으로

○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2조 2,352억 2천 3백만원 보다 2,934억 6천만원(13.1%)이 증액된 2조 5,286억 8천 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4.5%를 차지하며

- 인적자원운용 336억 4천 7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752억 5천 9백만원
- 교육격차해소 39억 4천 7백만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130억 8천 3백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457억 5천 1백만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217억 7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42억 5천 4백만원 보다 15억 5천 7백만원(36.6%)이 증액된 58억 1천 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며

- 평생교육 12억 1천 4백만원

- 직업교육 3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교육일반비는**

기정 예산액 1,376억 7천만원 보다 40억 9천만원(3.0%)이 증액된 1,417억 6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며

- 교육행정일반 20억 7천 1백만원
- 기관운영관리 295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74억 8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 총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2,676,254	100.0	2,377,147	100.0	299,107	12.6
유아및초중등교육	2,528,683	94.5	2,235,223	94.0	293,460	13.1
평생·직업교육	5,811	0.2	4,254	0.2	1,557	36.6
교육일반	141,760	5.3	137,670	5.8	4,090	3.0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2,676,254	100.0	2,377,147	100.0	299,107	12.6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소 계	2,528,683	94.5	2,235,223	94.0	293,460	13.1
	인적자원운용	1,520,964	56.8	1,487,317	62.6	33,647	2.3
	교수-학습 활동지원	171,264	6.4	96,005	4.0	75,259	78.4
	교육격차해소	66,400	2.5	62,453	2.6	3,947	6.3
	보건/급식/ 체육활동	28,153	1.1	15,070	0.6	13,083	86.8
	학교재정 지원관리	536,690	20.0	490,939	20.7	45,751	9.3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05,212	7.7	83,439	3.5	121,773	145.9
평생 직업 교육	소 계	5,811	0.2	4,254	0.2	1,557	36.6
	평생교육	4,610	0.2	3,396	0.1	1,214	35.8
	직업교육	1,201	0.0	858	0.0	343	39.9
교육 일반	소 계	141,760	5.3	137,670	5.8	4,090	3.0
	교육행정일반	32,084	1.2	30,013	1.2	2,071	6.9
	기관운영관리	52,542	2.0	23,040	1.0	29,502	128.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8,107	1.8	75,590	3.2	△27,483	△36.4
	예비비 및 기타	9,027	0.3	9,027	0.4	-	-

□ 세출예산의 성질별 규모는

○ 인건비는

- 1조 2,892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6억 5백만원(2.4%)

○ 물건비는

- 867억 6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 8천 8백만원(9.4)

○ 이전지출비는

- 1,678억 5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3천 4백만원(2.5%)

○ 자산취득비는

- 2,708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0억 7천 2백만원(130.0%)

○ 전출금은

- 8,052억 3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2억 9천만원(19.6%)

○ 예비비 및 기타는

- 90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 상환지출비는

- 473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4억 8천 3백만원(△36.7%)이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금 액	%	금액	%		
합 계	2,676,254	100	2,377,147	100.0	299,107	12.6
인 건 비	1,289,208	48.2,	1,259,603	53.0	29,605	2.4
물 건 비	86,766	3.3	79,278	3.3	7,488	9.4
이전지출	167,855	6.3	163,721	6.9	4,134	2.5
자산취득	270,858	10.1	117,786	5.0	153,072	130.0
상환지출	47,306	1.8	74,789	3.1	△27,483	△36.7
전 출 금	805,232	30.0	672,942	28.3	132,290	19.6
예비비및기타	9,029	0.3	9,028	0.4	1	0.0

□ 세출예산의 기관별 편성내역은

○ 교육위원회는 기정예산 6억 4천 8백만원보다 6.6% 증가한

6억 9천 1백만원이고

○ 본청 예산은 기정예산 1조 8,904억 1천 2백만원보다 11.0% 증가한 2조 992억 8천 7백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78.5%을 차지하며

○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3천 9백만원 보다 6.4% 증가한 130억 2천 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 포항교육청을 비롯한 23개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 4,738억 4천 8백만원 보다 18.9% 증가한 5,632억 5천 4백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1.0%을 보이고 있음

-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676,254	100	2,377,147	100.0	299,107	12.6
교육위원회	691	0.0	648	0.0	43	6.6
본 청	2,099,287	78.5	1,890,412	79.6	208,875	11.0
직속기관	13,022	0.5	12,239	0.5	783	6.4
지역교육청	563,254	21.0	473,848	19.9	89,406	18.9
포항교육청	87,850	3.3	77,616	3.3	10,234	13.2
경주교육청	52,031	1.9	47,073	2.0	4,958	10.5
김천교육청	36,570	1.4	27,928	1.2	8,642	30.9
안동교육청	31,075	1.2	26,044	1.1	5,031	19.3
구미교육청	67,621	2.5	52,585	2.2	15,036	28.6
영주교육청	24,919	0.9	21,280	0.9	3,639	17.1
영천교육청	20,733	0.8	18,661	0.8	2,072	11.1
상주교육청	30,683	1.1	25,677	1.1	5,006	19.5
문경교육청	15,415	0.6	13,136	0.5	2,279	17.4
경산교육청	48,686	1.8	39,349	1.6	9,337	23.7
군위교육청	10,144	0.4	9,067	0.4	1,077	11.9
의성교육청	13,034	0.5	10,559	0.4	2,475	23.4
청송교육청	8,642	0.3	7,780	0.3	862	11.1
영양교육청	7,517	0.3	4,767	0.2	2,750	57.7
영덕교육청	9,885	0.4	8,858	0.4	1,027	11.6
청도교육청	15,760	0.6	12,177	0.5	3,583	29.4
고령교육청	18,642	0.7	17,579	0.7	1,063	6.0
성주교육청	10,509	0.4	8,655	0.4	1,854	21.4
칠곡교육청	20,371	0.7	16,620	0.7	3,751	22.6
예천교육청	10,867	0.4	9,639	0.4	1,228	12.7
봉화교육청	8,932	0.3	7,310	0.3	1,622	22.2
울진교육청	9,675	0.4	8,344	0.4	1,331	16.0
울릉교육청	3,693	0.1	3,144	0.1	549	17.5

Ⅴ. 종합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 세입부문

○ 최근의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물가오름세의 확대 및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관계로 세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에 있음

○ 이번 추경의 세입재원중 법정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226억원이 감액된 부분과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부분은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도청과의 예산편성 시기 차이와 전출금 규모의 불확실성, 경기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도 판단되며

○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3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617억 4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예산 편성시 추계치를 축소 편성하여 차액을 5개월 이상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는 바

○ 향후 본예산 편성시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 재정확충에 가일층 주력함은 물론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신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입예산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전년도 결산 및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있어 자체수입중 자산수입 67억 4천만원(206.8%)이 증액된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판단되는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가급적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특별교부금 증액에 있어 자체수입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면 부족재원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국고지원금을 확충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개발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 아울러 비법정 이전수입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부문

○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에 대하여

•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추경 재원중 40.4%에

해당하는 1,209억원의 많은 예산을 영어체험교실 등 영어 공교육 완성, 기숙형 공립고 등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체육예술교과 내실화 등 즐거운 학교만들기, 교원능력제고 등 기타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및 기본학력 신장에 기여하고 학생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특기적성 개발과 창의력 신장 등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하여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자의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바

- 이번 추경에서도 비록 국가부담이라고 하지만 289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명예퇴직수당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향후 명예퇴직 대상자의 결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교사수급과 교단의 공동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당초예산 대비 예산절감계획(10%)에 대하여

- 국가재정 10% 절감 시책에 맞추어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 고유가, 고환율의 경제여건 하에서 물가상승세가 대부분의 품목으로 확산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단순히 예산절감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두어 사업을 연기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절감재원의 효과적 재투자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에 대하여

-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BTL사업으로는 포항 원동초, 남부초, 청송 진보중·고, 봉화중·고 등 신·개축 9개교와 다목적 강당 신축 대도초 등 9개교가 있음

- 그러나, 최근 건설 원자재 값이 폭등함에 따라 시공 중인 일부사업에서 업체들이 추가 예산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기가 지연되는가 하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로 인해 교육수요자들로부터 민원제기 및 공사대금 관련 임금체불, 부실공사 등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BTL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는 초등교의 경우 복식 수업, 중등교는 비 전공자 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여 수업의 질 향상이 어렵다고 보여지며, 지식기반 사회에서 특히 필요한 네트워킹 형성이 어려워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은 지역의 상징적 구심점 상실 등을 이유로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통폐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 지원, 폐지학교 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등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학교급식 사업에 대하여

-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표면적인 관심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관심 표출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며 급식시설이 노후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여 신뢰받는 급식이 되도록 하는 한편, 도내 학교중 급식시설이 노후화된 곳을 파악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요청 등 체계적으로 급식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경상북도학생 해양수련원 설립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련원 조성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비 등 16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으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중앙부처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예산편성은 사업추진 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275억원중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투자심사결과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Ⅶ.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Ⅷ. 심사결과 : 수정가결(조서별첨)

Ⅸ.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8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조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2건		5,600,000	
655	과학산업교육과	마이스터고 설립운영 지원 가. 기자재 확충비	400,000	
1228	교육시설과	기숙형 공립고 시설비 2) 시설비	5,200,00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1건		5,600,000	
	기획예산과	예비비	5,600,000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8. 6. 30(월)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경 상 북 도 의 회

목　　차

1. 소관기관 ····· 2

2. 심사경과 ····· 2

3. 제안설명의 요지 ····· 2

4. 세입·세출 결산 ····· 3

5. 세입·세출외 결산 ····· 14

6. 검토의견 ····· 21

7. 질의·답변요지 ····· 36

8. 토론요지 ····· 36

9. 종합심사결과 ····· 36

10. 소수의견요지 ····· 36

※ 보조자료 ····· 37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10,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8. 6.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6.25 : 상정·질의·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윤정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7회계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운용의 결산 승인

4. 세입·세출 결산

1) 결산규모

가. 총 괄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05억 36백만원을 포함하여 4조 3,031억 95백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4조 4,720억 17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4조 1,058억 26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3,661억 91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54억 66백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규모 】

(단위 : 억원)

회계명	예산현액 (A)	결산액			잉여금 내역		
		세입 (B)	세출 (C)	잉여금 (B-C)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43,032	44,720	41,058	3,662	781	26	2,855
일반회계	35,376	37,117	33,839	3,278	752	26	2,500
특별회계	7,656	7,603	7,219	384	29	0	355

나. 회계별 규모

(1) 일반회계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90억 72백만원을 포함하여 3조 5,375억 66백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3조 7,117억 22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3조 3,839억 7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3,278억 15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99억 79백만원임

(2) 특별회계

○ 200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63백만원을 포함하여 7,656억 29백만원으로써
- 세입결산액은 7,602억 95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7,219억 19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383억 76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87백만원임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규모 】

□ 회계별 결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예 산 현 액		4,303,195	100.0	3,537,566	100.0	765,629	100.0
세 입 결 산 액 (A)		4,472,017	103.9	3,711,722	104.9	760,295	99.3
세 출 결 산 액 (B)		4,105,826	95.4	3,383,907	95.6	721,919	94.3
잉 여 금 (A-B)		366,191	8.5	327,815	9.3	38,376	5.0
	명 시 이 월	29,815	-	27,480	-	2,335	-
	사 고 이 월	48,257	-	47,703	-	554	-
	보조금집행잔액	2,653	-	2,653	-	0	-
	순 세계잉여금	285,466	-	249,979	-	35,487	-

□ 회계별 결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현 액 (A)	결 산 액			잉 여 금 내 역		
			세 입 (B)	세 출 (C)	세계잉여금 (B-C)	이 월 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3,032	44,720	41,058	3,662	781	26	2,855
일 반 회 계		35,376	37,117	33,839	3,278	752	26	2,500
특 별 회 계		7,656	7,603	7,219	384	29	0	355
공기업	소 계	2,813	2,736	2,600	136	0	0	136
	지역개발기금	2,813	2,736	2,600	136	0	0	136
기타	소 계	4,843	4,867	4,619	248	29	0	219
	의료보호기금	3,846	3,847	3,845	2	0	0	2
	치 수 사 업	365	398	339	59	19	0	40
	경도대학운영	71	71	68	3	0	0	3
	광역교통시설	94	94	93	1	0	0	1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67	457	274	183	10	0	173

2) 세입결산

가. 총 괄

○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4조 4,720억 17백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조 3,031억 95백만원 보다 1,688억 22백만원이 증가(3.9%)하였으며

○ 그중 일반회계가 3조 7,117억 22백만원(83.0%)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7,602억 95백만원(17.0%)임

○ 2007년도 미수납액은 652억 73백만원으로서, 93억 3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59억 70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세입부문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C/B)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합 계	4,303,195	4,537,290	4,472,017	65,273	9,303	55,970	98.6
일반회계	3,537,566	3,776,010	3,711,722	64,288	9,300	54,988	98.3
특별회계	765,629	761,280	760,295	985	3	982	99.9
공기업	281,298	273,637	273,637	0	0	0	100.0
기 타	484,331	487,643	486,658	985	3	982	99.8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4,303,195백만원 4,222,660백만원 80,535백만원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7,117억 2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조 5,375억 66백만원 보다 1,741억 56백만원(4.9%)이 증가하였으며

○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8,339억 96백만원, 세외수입 4,154억 85백만원, 지방교부세 7,243억 64백만원, 국고보조금 1조 6,828억 77백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550억원임.

○ 미수납액은 642억 88백만원으로, 93억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49억 88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손처분	익년도 이월	C/A	C/B
합 계	3,537,566	3,776,010	3,711,722	64,288	9,300	54,988	104.9	98.3
지 방 세	720,000	897,135	833,996	63,139	9,276	53,863	115.8	93.0
세 외 수 입	393,108	416,633	415,485	1,149	24	1,125	105.7	99.7
지방교부세	688,449	724,364	724,364	0	0	0	105.2	100.0
국고보조금	1,681,009	1,682,877	1,682,877	0	0	0	100.1	100.0
지방채및예치금	55,000	55,000	55,000	0	0	0	100.0	100.0

※ 예 산 현 액 =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3,537,566백만원 3,458,494백만원 79,072백만원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602억 9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656억 29백만원보다 53억 34백만원(-0.7%)이 감소되었으며,

○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2,736억 37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3,847억 36백만원, 치수사업 397억 71백만원, 경도대학운영 71억 18백만원, 광역교통시설 93억 80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456억 53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9억 85백만원으로, 3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9억 82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부문 재원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 재원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C/A	C/B
합 계	765,629	761,280	760,295	985	3	982	99.3	99.9
지역개발기금	281,298	273,637	273,637	0	0	0	97.3	100.0
의료급여기금	384,600	384,736	384,736	0	0	0	100.0	100.0
치 수 사 업	36,526	40,375	39,771	604	3	601	108.9	98.5
경 도 대 학	7,115	7,118	7,118	0	0	0	100.0	100.0
광역교통시설	9,380	9,761	9,380	381	0	381	100.0	96.1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6,710	45,653	45,653	0	0	0	97.7	100.0

※ 예 산 현 액 = 예 산 액 + 전년도 이월액

765,629백만원 764,166백만원 1,463백만원

3) 세출결산

가. 총 괄

○ 2007년도 세출결산액은 4조 1,058억 26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조 3,031억 95백만원 대비 95.4%를 지출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조 3,839억 7백만원, 특별회계에서 7,219억 19백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음

○ 집행잔액 1,973억 69백만원 중 이월사업비 801억 72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171억 97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세출부문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잔액)	지출비율 (B/A)
합 계	4,222,660	4,303,195	4,105,826	80,172	117,197	95.4
일반회계	3,458,494	3,537,566	3,383,907	77,283	76,376	95.7
특별회계	764,166	765,629	721,919	2,889	40,821	94.3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3조 3,839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3조 5,375억 66백만원 대비 95.7%를 지출하였음.

○ 성질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4,266억 14백만원, 사회개발비 1조 3,824억 99백만원, 경제개발비 1조 1,722억 2백만원, 방위비 1,410억 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15억 88백만원임.

○ 집행잔액 1,536억 59백만원중 이월사업비 772억 83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763억 76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성질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불용액 (E)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3,458,494	3,537,566	3,383,907	77,283	76,376	95.7	2.2	2.1
일반행정비	429,170	432,035	426,614	2,811	2,610	98.7	0.7	0.6
사회개발비	1,385,834	1,392,848	1,382,499	6,382	3,967	99.2	0.5	0.3
경제개발비	1,166,247	1,240,156	1,172,202	59,919	8,035	94.5	4.8	0.6
민 방 위 비	144,373	149,763	141,004	8,171	588	94.2	5.4	0.4
지원및기타경비	332,870	322,764	261,588	0	61,176	81.0	0	19.0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7,219억 19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7,656억 29백만원 대비 94.3%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2,600억 56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3,845억 20백만원, 치수사업 338억 81백원, 경도대학운영 68억 29백만원, 광역교통시설 93억 32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273억 백만원임.

○ 집행잔액 437억 10백만원중 28억 89백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08억 21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현액 (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불 용 액 (E)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합 계	764,166	765,629	721,919	2,889	40,821	94.3	0.4	5.3
지역개발기금	281,298	281,298	260,056	0	21,241	92.4	0	7.6
의료급여기금운영	384,600	384,600	384,520	0	80	100.0	0	0
치 수 사 업	35,063	36,526	33,881	1,889	756	92.8	5.2	2.0
경도대학운영	7,115	7,115	6,829	0	286	96.0	0	4.0
광역교통시설	9,380	9,380	9,332	0	48	99.5	0	0.5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6,710	46,710	27,301	1,000	18,409	58.5	2.1	39.4

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한 내역은 없음

라. 계속비 집행

○ 2007년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총1건(사업명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에 44억 27백만원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예산집행】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업비	예비비사용	이용・전용				
2005	2,738				2,738	500	2,238	
2006	3,872	2,238			6,110	6,110		
2007	4,427				4,427	4,427		

※ 3차년도 세출과목 :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위생,보건환경연구원, 자체사업, 402-02(민간대행사업비)

마. 예비비 지출

○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 711억 97백만원 중 태풍 “우쿵” 피해복구외 21건 101억 5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1억 78백만원을 지출하고, 9억 9백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611억 10백만원임

※ 상세내역은 붙임 “보조자료” 참조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도청소재지 적정입지 선정용역』외 90건에 780억 72백만원으로

○ 그 중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88건에 751억 83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40건 274억 80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8건에 477억 3백만원임

○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3건에 28억 89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2건 23억 35백만원, 사고이월은 1건에 5억 54백만원임

※ 상세내역은 붙임 "보조자료" 참조

사. 채무부담 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음

아. 수입대체경비

○ 지방재정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원의 수입대체경비 중 세입결산액은 8억 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 69백만원임

5. 세입·세출외 결산

1) 기 금

가. 총 괄

○ 2007년도말 경상북도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으로서, 2006년도말 현재액 2,185억 57백만원 보다 183억 24백만원이 증가한 2,368억 81백만원임

나. 기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6년말 현재액(A)	2007년도 증감			2007년말 현재액(E=A+D)
		수납액(B)	지출액(C)	증감(D=B-C)	
계 (17종)	218,557	124,005	105,681	18,324	236,881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3,222	315	152	163	3,385
중소기업육성기금	98,231	88,859	80,020	8,839	107,070
문화예술진흥기금	4,527	399	432	-33	4,494
체육진흥기금	15,320	750	500	250	15,570
농어촌진흥기금	29,462	23,401	14,950	8,451	37,913
포플라장학기금	220	7	9	-2	218
사회복지기금	6,324	426	156	270	6,594
재해구호기금	15,381	897	95	802	16,183
장애인복지기금	2,110	111	103	8	2,118
노인복지기금	2,476	121	117	4	2,480
식품진흥기금	16,561	1,956	4,532	-2,576	13,985
여성발전기금	3,473	161	104	57	3,530
청소년육성기금	3,402	85	150	-65	3,337
재난관리기금	15,107	5,179	3,027	2,152	17,259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230	1,272	1,268	4	1,234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511	66	66	0	1,511
통합관리기금	0	77,617	0	77,617	77,617

※ 통합관리기금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2) 채권 및 채무

가. 채 권

○ 2007년도말 경상북도의 채권현재액은 1조 3,615억 86백만원으로 2006년도말 1조 2,505억 72백만원보다 1,110억 1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43억 72백만원, 특별회계 9,305억 81백만원, 기금 3,166억 33백만원이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7억 54백만원, 융자금 채권이 1조 3,598억 32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채 권 내 역
	계	일 반	특 별	기 금	
계	1,361,586	114,372	930,581	316,633	
보증금채권	1,754	1,754	0	0	◦ 일반회계 · 소방행정과 등 숙소 임차 1,650 · 전화 전용회선 예치금 등 104
융자금채권	1,359,832	112,618	930,581	316,633	◦ 일반회계 · 농촌주택개량 98,011 ·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등 2 14,607 ◦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930,581 ◦ 기 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233,074 · 농어촌진흥기금 70,141 · 식품진흥기금 7,943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등 5,475

나. 채 무

○ 2007년말 경상북도의 채무현재액은 1조 80억 12백만원으로, 2006년말 9,596억 46백만원 보다 483억 6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716억 40백만원, 특별회계 6,356억 5백만원, 기금 1,007억 67백만원임

○ 종류별로는 지방채 7,363억 72백만원, 차입금 2,716억 40백만원임

【 채무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별				채무내역
	계	일반	특별	기금	
계	10,080	2,716	6,356	1,008	
지방채	7,364	0	6,356	1,008	
공기업 특별회계	6,356	0	6,356	0	• 지역개발기금채권 매출 6,356
기금	1,008	0	0	1,008	• 재정자금차입 13 • 지역개발기금 차입 995
차입금	2,716	2,716	0	0	• 정부자금 차입 336 • 지역개발기금 차입 2,372 • 청사정비기금 차입 8

3) 공유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 2007년도말 경상북도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7,607억 5백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 5,945억 1천만원 보다 1,661억 9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토지는 구미 원평 119안전센터 이전부지, 2007년 이전 미등재 토지 등으로 10,394필지 1,080억원이 순증하였으며
- 건물은 자인 119안전센터, 2007년 이전 미등재 건물 등으로 31동 494억원이 순증하였음
- 유가증권은 포항영일신항만(주), (주)한국가스공사, 경북통상(주) 등의 출자금으로 1,695천주 85억원이 순증하였고
- 용익물권은 일성·사조콘도의 회원권 누락분을 등재하여 2억원이 순증 하였음

【 공유재산 종류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종 류 별	2006년도		증 감		2007년도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5,945		1,662		7,607
토 지(필)	64,087	4,708	10,394	1,080	74,481	5,788
건 물(동)	593	946	31	494	624	1,440
입목죽(주)	3,745,000	95	0	0	3,745,000	95
공작물(점)	3	31	0	0	3	31
선 박(척)	2	21	0	0	2	21
항공기(대)	2	131	0	0	2	131
유가증권(주)	252,953	13	1,695,000	85	1,947,953	98
용익물권(건)	0	0	49	2	49	2

나. 물 품

○ 2007년도말 경상북도의 물품 현재액은 547억 79백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 504억 55백만원 보다 43억 2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 소방차 및 인명구조차 22대 23억원, 중형컴퓨터 2대 8억원 등을 구매 또는 관리전환하여 60억원이 증가하고, 소방차 및 인명구조차 23대 6억원, 복사기 37대 2억원 등을 매각 또는 관리전환하여 17억원이 감소하였음

【 증감사유별 현재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도		증 감		2007년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2,216	504	133	43	2,349	547
구 매	1,565	430	155	44	1,720	474
관리전환	651	74	-22	-1	629	73

4) 금 고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2007년도말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4조 4,720억 16백만원, 세출 4조 1,058억 26백만원으로 3,661억 90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회계별 금고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 회계별	세 입	세 출	잔 액
합 계	4,472,016	4,105,826	366,190
일 반 회 계	3,711,722	3,383,907	327,815
특 별 회 계	760,294	721,919	38,375
지 역 개 발 기 금	273,637	260,056	13,581
의료급여기금운영	384,736	384,520	216
치 수 사 업	39,770	33,881	5,889
경 도 대 학	7,118	6,829	289
광 역 교 통 시 설	9,380	9,332	48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5,653	27,301	18,352

나. 세입세출외 현금

○ 2007년도말 경상북도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8억 7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8억 18백만원 보다 52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2억 12백만원, 보관금 6억 9백만원, 잡종금 등 기타 20억 49백만원임

【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 종류	2006년도말 현재액	2007년도 증감			2007년도말 잔액
		증가액	지출액	차감액	
합 계	2,818	126,652	126,600	52	2,870
보증금	0	230	18	212	212
보관금	317	10,884	10,592	292	609
잡종금 등 기타	2,501	115,538	115,990	-452	2,049

6.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1) 총괄부문

가. 결산규모

○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4조 3,031억 9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현액 3조 9,550억 44백만원 보다 3,481억 51백만원(8.8%)이 증가하였으며,

- 2002년부터 최근 6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4.5%임

【 예산현액 연도별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신 장 률(%)	
							연평균	전년대비
예산현액	35,501	38,598	32,273	35,718	39,550	43,032	4.5	8.8

○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9%인 4조 4,720억 17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5.4%인 4조 1,058억 26백만원으로
- 결산잉여금은 3,661억 91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 명시이월 298억 15백만원, 사고이월 482억 57백만원으로 총 이월사업비 780억 72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억 53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854억 66백만원임

나. 재정운용 상황

○ 경상북도의 최근 4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보면 세입부문은 연평균 9.2%, 세출부문은 10.4%씩 증가하고 있으며,

- 전년대비 결산결과는 세입부문이 8.9%, 세출부문이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전전년 대비 10.9%와 12.3%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음

○ 회계별 전년대비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부문 10.6%, 세출부문 9.4%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부문 1.2%, 세출부문 5.7% 증가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이 전년도 대비 25.7%로 크게 감소한 이유는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이 945억 7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치수사업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이 전년대비 27.1%, 1,036억 9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573억원, 60.9%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937억원, 예수금 수입(통합관리기금 세입금) 700억원 등으로 인한 것임

【 세입·세출 4년간 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신장율(%)	
						연평균	전년대비
세입(A)	합 계	3,430,380	3,702,370	4,107,912	4,472,017	9.2	8.9
	일반회계	2,692,516	2,992,674	3,356,733	3,711,722	11.3	10.6
	특별회계	737,864	709,696	751,179	760,295	1.1	1.2
	공기업	475,633	408,985	368,212	273,637	-16.6	-25.7
	기 타	262,231	300,711	382,967	486,658	23.0	27.1
세출(B)	합 계	3,054,138	3,360,492	3,775,453	4,105,826	10.4	8.8
	일반회계	2,512,646	2,805,319	3,092,367	3,383,907	10.4	9.4
	특별회계	541,492	555,173	683,086	721,919	10.4	5.7
	공기업	286,033	258,608	318,571	260,056	-1.6	-18.4
	기 타	255,459	296,565	364,515	461,863	21.9	26.7
잉여금 (A-B)		376,242 (11.0%)	341,878 (9.2%)	332,459 (8.1%)	366,191 (8.2%)	-	-

【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 】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2006년 대비 증감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예산현액	%	결산액	%
계	32,073	35,375	33,567	37,117	3,302	10.3	3,550	10.6
지방세	6,980	7,200	8,111	8,340	220	3.2	229	2.8
세외수입	2,409	3,931	2,582	4,155	1,522	63.2	1,573	60.9
지방교부세	6,174	6,884	6,309	7,244	710	11.5	935	14.8
보조금	15,800	16,810	15,855	16,828	1,010	6.4	973	6.1
지방채및예치금	710	550	710	550	160	-22.5	160	-22.5

2) 세입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규모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조 7,117억 2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 그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조 4,072억 41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의 64.9%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8.6% 증가하였고,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 2,494억 8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801억 93백만원(16.9%) 증가하였음

○ 지방채는 550억원을 기채하여 전체세입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710억원을 기채하였음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총 결손처분액은 93억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3억원, 특별회계 3백만원임

○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 결손처분은 92억 76백만원, 세외수입은 24백만원으로 지방세 결손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전년도 68억 28백만원에 비해 92억 76백만원을 정리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체납율은 2003년~2006년까지는 완만하게 줄어들다가 200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0.3% 높게 나타나고 있는 설정임

○ 지방세 미수납액 538억 63백만원 중 고질적 체납이 176억 59백만원(32.8%), 소송계류와 재산압류중인 체납액이 220억 2천만원(40.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세 부과를 신중히 하여 소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 수 납 액			체납율(%) (C/A)
			계(C)	결손처분	차년도이월	
2003년	612,682	557,352	55,330	7,363	47,967	9.0
2004년	657,034	601,356	55,678	7,217	48,461	8.5
2005년	753,105	699,136	53,969	3,956	50,013	7.2
2006년	869,517	811,081	58,436	6,828	51,608	6.7
2007년	897,135	833,996	63,139	9,276	53,863	7.0

【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등	기 타
지방세	53,863 (100.0%)	31 (0.1%)	2,586 (4.8%)	6,597 (12.2%)	17,659 (32.8%)	22,020 (40.9%)	4,970 (9.2%)

나.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경상북도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6종으로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7,602억 95백만원임. 회계별로는 지역개발기금 2,736억 37백만원, 의료급여기금 3,847억 36백만원, 치수사업 397억 71백만원, 경도대학운영 71억 18백만원, 광역교통시설 93억 80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456억 53백만원임

○ 2006년부터 결산을 시작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부문을 제외한 5개 특별회계의 4년간 총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수입이 4년간 4,756억원에서 2,736 억원으로 매년 감소되어 2,019억원이 감축된 것으로 이는 채권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의료급여기금은 매년 수입이 늘어나 4년간 1,788억원이나 증대된 것으로 이는 의료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2007년도 세입이 456억원 으로 전년대비 155억원이 증대되었음.

【 연도별·재원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737,864	709,697	751,179	760,295
지역개발기금	475,633	408,984	368,212	273,637
의료급여기금	205,898	245,532	286,838	384,736
치 수 사 업	40,884	36,608	49,521	39,771
경 도 대 학	8,157	6,608	6,255	7,118
광역교통시설	7,292	11,965	10,181	9,38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	-	30,172	45,653

(2)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

○ 2007년도에 총 7,612억 80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602억 95백만원을 징수하고 9억 85백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음

○ 미수납 이월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 2백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3억 80백만원으로 총 9억 82백만원임

3) 세출부문

가. 일반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조 3,839억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조 5,375억 66백만원의 95.7%를 지출하였음

○ 부문별 결산내역을 보면

- 일반행정비는 4,266억원, 총 지출액 대비 12.6%,
  사회개발비 1조 3,825억원, 40.8%
  경제개발비 1조 1,722억원, 34.6%
  민방위비 1,410억원, 4.2%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16억원 7.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 등 지원경비는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75.4%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개발비의 지출이 40.8%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부문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총계대비지출
합 계	3,537,566	3,383,907	100
일반행정비	432,035	426,614	12.6
사회개발비	1,392,848	1,382,499	40.8
경제개발비	1,240,156	1,172,202	34.6
민 방 위 비	149,763	141,004	4.2
지원및기타경비	322,764	261,588	7.8

(2) 예비비

○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004년 168억원, 2005년 174억원, 2006년 303억원, 2007년 712억원으로 2006년과 2007년에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예산액 711억 97백만원 중 재해복구비 등 22건에 101억 5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1억 78백만원을 지출하고, 9억 9백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611억 10백만원임

○ 예비비 사용내역 22건 중 17건은 호우나 태풍에 따른 재해복구비이며, 5건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이나 구상금이며 1건은 전국 바다의 날 행사에 따른 비용 부담금임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의 사용내역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대체적으로 규정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 민사소송에 따른 보상금 등은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미리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이와 같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항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임

(3) 이월사업비 현황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

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40건 274억 80백만원, 사고이월 48건 477억 3백만원으로 총 88건에 751억 8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억 8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최근 4년간 이월사업비는 연평균 15.4%, 전년대비 4.9%가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월사업 중 1년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편성시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하여 이월하기 보다는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업무담당자는 착공시기를 빨리 하여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평균	전년대비
68	125,586	84	96,724	73	79,072	88	75,183	-15.4%	-4.9%

나. 특별회계

(1) 세출결산 규모

○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219억 1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656억 29백만원의 94.3%를 지출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23억 35백만원, 사고이월 1건 5억 54백만원 등 28억 89백만원임

○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전용·이체,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음

(2) 원자력발전지역개발비 특별회계 운용철저

○ 태양광발전소 시범사업 15억원, 소수력발전소 시범사업 13억원을 2007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으며,

○ 지역개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206억 80백만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에 56억 55백만원을 감액하고, 제2회 추경에는 27억 93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빈번한 예산편성을 하여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사업 지원비 10억원은 국내 에너지 관련기업의 설립 및 도내 이전 희망업체의 기초 전수조사를 선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 이와 같이 빈번한 예산편성과 삭감은 특별회계의 설치기간

이 짧아 사업추진 방향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사업 기본계획의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2005년 2,418억원, 2006년 2,494억원, 2007년 2,855억원이며,

2005년에는 특별회계에서, 2006년과 2007년에는 일반회계에서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음

○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을 보면 지방세 1,140억원, 세외수입 224억원이 더 수납되고 지방교부세 361억원이 덜 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세입은 2006년과 2005년도에도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 순세계잉여금은 추계를 가급적 정확히 하여 연초 본예산 위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 위주로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2,418	883	1,535	2,494	1,827	667	2,855	2,500	355

5) 복식부기제도 운용

○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에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시스템인 발생주의 회계제도로서 단식부기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 되었으나

○ 그동안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단식부기에 의한 재정운용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음

○ 재무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산심의를 거쳐야 하나 보고서 자체가 상임위별로 분류되지 않고 전체를 망라하고 있어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 재무보고서의 공인회계사 의견도 기업회계에서처럼 감사의견

이 아닌 낮은 수준의 검토보고서를 표명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복식부기제도는 자체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단식부기제도에서 누락되었던 일부의 부동산과 채권, 용익물권 등을 찾아내어 등재하기도 했음

○ 궁극적으로 단식부기를 탈피하여 복식부기제도로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당초 도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식부기제도를 보완하는 첨부물로 계속 유지되거나, 어느 시점에서 제도 자체가 폐지될 것으로 사료됨

6) 기금운용관리 철저

○ 2007년도말 경상북도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으로서, 2006년도말 현재액 2,185억 57백만원 보다 183억 24백만원이 증가한 2,368억 81백만원임

○ 기금별 기금운용 계획변경내용 설명서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일부 항목들의 당초 대비 변경금액이 큰 폭을 나타내고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융자금대여, 사업계획 예측의 부적정성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으로 재정운용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예년의 평균치와 자금소요 연도의 여건변동 상황 등 전반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9. 종합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보 조 자 료

1. 이월사업 내역 / 37
- 일반회계 / 37
- 특별회계 / 48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 49

3. 예비비 지출 내역(일반회계) / 54

4.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 56
- 계획변경 취소 내역 / 57
-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 58

1. 이월사업비 내역

가. 일반회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27,479,795		
도청소재지 적정입지 선정용역	356,000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기간인 2008.06월까지 용역 수행	새경북기획단
낙동강프로젝트 기본계획 연구용역	361,200	기본계획연구용역이 '07.03.15~'08.03.21까지 국토 연구원과 계약	〃
낙동강프로젝트 시범사업	500,000	예천군 삼강주막 주변 복원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유지 매입을 위한 보상협의로 많은 시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
혁신도시 교육특구 등 활성화 용역	30,000	교육 명품도시 연구용역 결과를 본 후 교육특구 활성화 용역을 추진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이월	공공기관 이전지원팀
혁신도시 및 경북 지역발전 방안 용역	150,000	산업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으나 용역기간이 '08.7.23까지 9개월 정도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	〃
혁신도시 관망타워 건립설계경기공모 시상	20,000	혁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의 구체적 경관계획의 결과에 따라 위치, 규모 등을 협의한 후 설계공모	〃
혁신도시~입석 교차로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420,000	혁신도시를 국도4호선과 연결하는 실시설계 용역비의 국비지원이 '07.2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경찰청사무실 정비	973,983	업체선정(조달청)이 12월에 선정되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준공 '08.8.23)	회계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적측량 수수료	104,000	문화재청과 지적공사간의 의견조율 지연 등 측량 기간이 6~8개월 정도 예상됨에 따라 이월	문화재팀
자연환경연수원 본관 리모델링	1,018,600	쾌적한 연수 공간 제공을 위한 연수원 시설 및 식물원 정비공사로서 절대공기(5개월)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자연환경연수원
사무실 OA 집기구입	3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자산취득비 이월	〃
동해환경·에너지 연구센터 설치	2,889,639	추가예산 확보 및 사업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준공예정 '08.11월)	환경정책과
제2단계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2,500	원가계산용역을 2007.11월말에 완료하고 용역기관 선정 중에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수질보전과
도립노인전문 요양병원 증축	867,600	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공사로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 ('08.12월 준공예정)	노인복지과
위성영상 정보시스템 구축	450,000	첨단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으로 위성영상공급 방법 및 판매가격 미 설정(한국항공우주연구원)	건축지적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미래형농어촌마을 개발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 용역	132,000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완료 2008.07.09)	농촌개발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근해부문)	2,796,000	'07.10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잔존가치평가 용역 등 사업대상자별 평가 기간 부족	수산진흥과
경제자유구역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20,000	용역수행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경제기획팀
정보통신민원정보 시스템 구축분담금	60,000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의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결정	정보통신팀
경상북도산림정보 원격탐사시스템 개선사업 감리용역	29,106	산림정보원격 탐사시스템 DB구축 용역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완료기한 '08.12.22)	산림과
경상북도산림정보 원격탐사시스템개 선사업DB구축용역	439,600	DB구축 용역에 장기간(13월)소요 되어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완료 '08.12월)	〃
도시림실태 조사용역	38,000	도시림실태조사에 장기간(10개월)이 소요되어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완료 '08.5.31)	〃
자연휴양림조성 (안동호반휴양림)	193,170	절대공기(6개월)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부득이 이월 (준공 '08.4.2)	산림소득개발원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구축	30,000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 (완료예정 '08. 9.30)	〃
구역 내 미매입 사유지 매입	940,454	감정평가, 소유자 보상협의 등에 따라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완료예정 '08.12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수목원 확대조성	1,358,000	절대공기 부족 등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 하여 부득이 이월 (준공기한 '08. 7. 7)	수목원관리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669,263	봉황지구외 4개지구로서 '07.2월에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	치수방재과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수립용역	204,000	'07.6월에 발주하였으나 용역기관이 1년 이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	〃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	776,595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종합건설 사업소
지방도유지관리 (위험도로선형개량)	2,169,693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지방도유지관리 (교량개체사업)	389,456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자동차교통 관리 개선사업	995,345	사전환경성 검토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종합건설 북부지소
지방도유지관리 (위험도로선형개량)	986,030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고령소방서 신축	2,450,000	문화재 발구조사에 따른 사업 지연 (준공예정 '08.12월)	소방행정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소방차량보강 (포항북부소방서 소형펌프 1대)	143,000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납품완료 '08.7월)	소방행정과
소방차량보강 (영주소방서 중형펌프1대)	120,000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납품완료 '08.7월)	〃
헬기야간 비행장비	296,561	야간비행용 계기판설치에 따른 기술검토과정에서 많은 시간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방호구조과
재난주민응급피난소 및 체력단련시설조성	324,000	소방서 부지와 건축물소유권 일원화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이월	울진소방서
재난주민 응급피난소 및 체력단련시설조성	46,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물품취득비 이월	〃
죽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200,000	국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절차 등에 따라 사업기간 필요하여 부득이 이월	〃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49,803,454		
신라체험사절유택 테마관광자원개발	26,700	연구용역기간이 '07.10.15 ~ '08.3.12까지로 현재 용역 추진중	관광개발팀
동해환경에너지연구센터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8,861	설계용역기간 연장 (완료예정 '08. 3월)	환경정책과
팔공산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지형도면고시사업	107,600	용역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완료예정 '08. 6월)	〃
경북해양심층수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89,000	국가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심층수법 하위법령 제정지연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완료예정 '08.3월)	해양정책과
연안침식실태 및 대응방안연구용역	179,940	중앙부처 사업지구와의 중복우려 및 심층적이고 내실화를 위한 검토등으로 착공지연 (완료예정 '08.10월)	〃
청소년문화존 시범사업	8,000	시·군비 부담분 확보지연	여성청소년가족과
우수농산물 명품화 사업	80,000	시군비부담분 확보지연 및 자부담 융자지연(완료예정 '08.4월경)	농산물유통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2,205,000	농림부에서 08년도로 예산을 이월함에 따라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준공예정 '08. 하반기)	농촌개발과
지방어항 기본계획변경 및 환경영향 평가	129,190	용역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 (완료에정 '08. 4월)	수산진흥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관리사신축 및 부속동리모델링 공사	331,669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 '08. 4월)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한해성 어패류 생산 시설공사	136,989	추가공사로 인한 시설자재 수입 등으로 부득이 이월(준공예정 '08. 4. 12)	수산자원개발 연구소
제11호태풍나리 (07.9.13~18) 피해복구비	217,861	피해복구에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준공예정 '08. 5월)	산림과
사방사업	165,257	동계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준공예정 '08. 3월)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471,164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설계 및 입찰공고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준공예정 '08. 12월)	치수방재과
지방도체불용지매입	275,040	보상협의지연, 감정평가 소요기간 등으로 이월(완료예정 '08. 7월)	도로철도과
국가지원지방도사업	22,170,409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 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 (준공예정 '08. 6월)	〃
지방도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315,000	2007추경 시 확보한 예산으로 2007. 11월 용역시행 용역기간 1년간으로 부득이 이월 ('08. 10월 완료예정)	〃
지방도 사업	5,042,243	보상협의 지연,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70,524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사업기간 '07. 7월 ~ '08.3월)	종합건설 사업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146,070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비 부득이 이월 (사업기간 '06.12월 ~ '08.3월)	〃
사리도 확·포장 사업	1,045,627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부족 (사업기간 '07.11월 ~ '08.3월)	〃
교통소통대책	1,674,804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부족 (준공예정 '08.6월말)	〃
지방도유지관리	391,383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
교량교체사업	1,139,975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부족 (준공예정 '08. 9월)	〃
교량안전진단	114,824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부족 (준공예정 '08. 7월)	〃
교량정밀점검	37,475	절대공기부족(준공예정 '08. 7월)	〃
낙화암3도로 선형개량공사	366,935	사전환경검토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준공예정 '08.12.24)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문거도로 선형개량 공사	189,614	사전환경검토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준공예정 '08.12.19)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하눌도로 선형개량 공사	293,332	사전환경검토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준공예정 '08.9.20)	〃
06년 호우 및 산사태피해 복구사업(06명시이월)	1,856	수해복구사업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비 이월	〃
상당~두천간도로 확포장 공사(2차)	38,355	관급자재(철근)수급 곤란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준공예정'09.3.3)	〃
동로~상리간도로 확포장 공사(3차)	1,942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보상비 이월	〃
포리~벌방간도로 확포장 공사(5차)	1,303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보상비 이월	〃
영해국도연결재포장 공사(3차)	61,060	보상협의 및 가옥철거지연에 따른 보상비, 폐기물 처리비 이월	〃
판사~기산~무창간 도로 확·포장공사(2차)	6,253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보상비 이월	〃
옥성도로실시설계용역	156,685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완료예정 '08.6.21)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8.27~9.9기간 호우피해복구사업	352,755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준공예정 '08.7월)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2007태풍 피해복구사업	338,338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준공예정 '08.7월)	〃
신흥도로 선형개량공사	26,057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준공예정 '08.7.14)	〃
화성도로 선형개량공사	203,056	사전환경성검토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준공예정 '08.11.17)	〃
서릉도로 선형개량공사	75,289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준공예정 '08.7.16)	〃
그레이더 구입	219,000	그레이더 낙찰업체 계약위반으로 이월	〃
구조차보강	581,000	납품지연에 따라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08. 7월 납품예정)	소방행정과
고령소방서 신축	1,882,445	고령소방서 신축부지 문화재발굴조사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준공예정 '08.12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소방장비보강	1,705,751	납품지연에 따라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완료예정 '08. 7월)	소방행정과
헬기음성/비행데이터 기록장치	340,954	기록장치공급업체의 납품지연에 따라 지체상금부과 조건으로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완료예정 '08.6월)	〃
소방청사부지 교환차액보상금	6,289	소방청사부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교환차액 보전비 추가발생으로 연도내 사업비 집행 불가 (완료예정 '08. 6월)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74,580	영천소방서 청사신축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 및 농지전용허가 진행중에 있어 연도내 사업비 집행 불가	〃

나. 특별회계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2,334,800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1,334,800	연봉천외 5개 하천으로 입찰공고 등으로 '07. 11월에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치수방재과
신생성에너지산업육성 및 보급사업지원	1,000,000	국내에너지관련 기업의 설립 및 도내 이전 희망업체의 기초전수조사를 선행한 후 본 사업을 추진코자 부득이 이월	에너지산업팀

□ 사고이월

(단위: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사 유	해당실과
계	554,090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554,090	용역비가 추경에 확보되고 제반행위 절차이행과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 (준공예정 '08. 12월)	치수방재과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일반회계)

(단위 : 천원)

장 별	사 업 명	금 액			관 련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계		243,350,229	240,697,440 (406,180)	2,652,789	
일 반 행정비	소 계	560,872	519,236	41,636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	485,539	453,248	32,291	자치행정과
	·도자원봉사교육코디네이팅도우미	4,053	0	4,053	새마을봉사과
	·일반여권발급	71,280	65,988	5.292	새마을봉사과
사 회 개발비	소 계	16,214,644	15,796,721	417,923	
	·국악강사풀제운영지원	324,000	309,455	14,545	문화예술과
	·무대공연작품	341,000	333,692	7,308	”
	·시군생활체육지도자배치	859,140	847,878	11,262	체육진흥과
	·시군어르신체육활동지원	269,730	267,233	2,497	”
	·경북형전통한옥체인구축용역	20,000	18,787	1,213	관광개발팀
	·테마형관광상품개발및시범관광단운영	300,000	273,622	26,378	”
	·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수당	420	0	420	보건정책과
	·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	8,257	4,542	3,715	”
	·농어촌응급의료기관인건비지원	544,000	543,840	160	”
	·질병관리국제협력및조사사업	1,500	1,461	39	보건환경연구원
	·방문보건사업운영	7,290	6,725	565	보건정책과
	·건강생활실천사업홍보등	33,250	31,919	1,331	”
	·만성질환관리사업담당자교육	711	706	5	”
	·금연클리닉사업홍보	4,500	4,476	24	”
	·외국인근로자노숙자무료 진료	40,500	40,379	121	”
	·에이즈감염자치료비보상	37,797	37,769	28	”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	162,795	162,232	563	”
	·만성질환관리광역자치단체사업	50,000	47,500	2,500	”
	·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	4,550	3,250	1,300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9,800	107,395	2,405	”

(단위 : 천원)

장 별	사 업 명	금 액			관 련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사 회 개발비	·대기오염망측정기교체	135,000	126,815	8,185	환경정책과
	·상수도MOU체결성과보고	10,000	9,350	650	수질보전과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12,617,297	12,338,065	279,232	노인복지과
	·여성지원활동센터관리자인부임	9,357	9,319	38	여성청소년가족과
	·보육교사보수교육	92,750	75,990	16,760	”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급	91,000	55,855	35,145	”
	·폭력추방지역협의회운영	95,000	94,030	970	”
	·중장기청소년쉼터운영	45,000	44,436	564	”
경 제 개발비	소 계	225,028,520	222,852,454 (115,680)	2,176,066	
	·일반운영비	4,750	3,992	758	농 업 정 책 과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협의회	2,700	1,992	708	”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체용	60,000	59,000	1,000	”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농가교육	46,000	44,110	1,890	”
	·농업경영컨설팅지원	358,000	350,599	7,401	”
	·창업후견인제및농업인턴제	138,600	134,050	4,550	”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184,900	173,524	11,376	”
	·창업농후계농업인육성	68,900	51,586	17,314	”
	·경관보전직불제	64,201	63,547	654	친환경농업과
	·폐비닐수거비	572,670	571,468	1,202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378,317	3,378,292	25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5,740,292	5,728,580	11,712	”
	·쌀소득보전직불제	100,944,974	100,922,521	22,453	”
	·과수원정비지원	750,000	742,840	7,160	”
	·토양개량제공급	6,247,199	6,247,183	16	”
	·천적활용원예작물방제	502,500	496,200	6,300	”
	·마늘경쟁력(종구갱신)	96,000	92.889	3,111	”
	·마늘경쟁력(생산기계화)	361,664	361,113	551	”
	·일시사역인부임	1,800	1,661	139	”
	·일반운영비	36,200	35,921	279	”
	·국외여비	11,100	10,341	759	”

(단위 : 천원)

장 별	사 업 명	금 액			관 련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경 제 개발비	·FTA자율사업운영비	265,085	256,506	8,579	친환경농업과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5,064,287	4,945,970	118,317	”
	·과원폐업지원	27,270,000	26,309,791	960,209	”
	·닭뉴캐슬병예방약구입	266,112	265,934	178	축산경영과
	·가축방역약품구입비	1,359,304	1,357,299	2,005	”
	·공익수의사인건비	188,820	174,531	14,289	”
	·부르셀라체혈비지원	248,750	248,442	308	”
	·예방접종시술비	206,585	182,125	24,460	”
	·축산분뇨처리시설	2,907,523	2,833,212	74,311	”
	·공종방제단운영비	1,094,150	1,056,764	37,386	”
	·학교우유급식사업	1,543,475	1,459,102	84,373	”
	·공익수의사인건비	9,441	9,120	321	가축위생시험소
	·BSE검사실유지보수비	13,000	12,878	122	”
	·축산물검사수거비	6,750	6,740	10	”
	·축산물검사장비	170,000	168,179	1,821	”
	·공익수의사인건비	9,441	9,120	321	가축위생시험소동부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256,968	256,949	19	농업기술원
	·농업산학협동	1,200	925	275	”
	·4대사회보험	350	324	26	”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추진교재유인등	14,000	13,827	173	”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참석급식및학습물지원	6,000	5,695	305	”
	·농업전문인력양성	559,000	555,420	3,580	”
	·환경보전농업기술	632,000	631,993	7	”
	·한국농업전문학교졸업생관리	62,000	60,563	1,437	”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	811,500	810,605	895	”
	·컨설팅지원사업	16,000	15,818	182	경영정보연구소

(단위 : 천원)

장 별	사 업 명	금 액			관 련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경 제 개발비	·핵과류지역특화기술개발등 국내여비	13,140	13,080	60	청도복숭아시험장
	·고추지역특화기술개발 일반운영비	5,648	5,609	39	영양고추시험장
	·고추지역특화기술개발 시험연구비	6,912	6,890	22	”
	·떫은감지역특화기술개발시험여비	4,195	4,192	3	상주감시험장
	·학술회의교재유인	500	461	39	구미화훼시험장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재료구입등	6.996	6.496	500	풍기인삼시험장
	·지역에너지사업및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등	21,000	19,868	1,132	과학기술진흥팀
	·지역에너지사업및에너지개발 담당공무원해외연수비	15,000	13,941	1,059	”
	·시도행정정보화사업	264,960	255,372	9,588	정보통신산업팀
	·정보화마을컨텐츠구축	100,000	97,723	2,277	”
	·산지관리지원	14,800	14,575	225	산림과
	·임산물생산이력제지원	35,000	30,416	4,584	”
	·임산물표준출하및포장디자인개선	76,000	70,000	6,000	”
	·사방사업	870,625	862,953	7,672	”
	·공공산림가꾸기	4,324,061	4,299,364	24,697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4,612,570	4,344,405	268,165	”
	·조림사업	4,088,460	4,023,052	65,408	”
	·임산물유통시설지원	632,000	620,083	11,917	”
	·숲가꾸기	16,326,349	16,294,069	32,280	”
	·병충해예찰조사지도원인부임	14,871	13,868	1,003	”
	·산불방지종사원근무복	3,000	2,952	48	”
	·생활림조성실태조사	40,000	38,000	2,000	”
	·산림병해충방제	5,383,183	5,209,117	174,066	”
	·산불방지대책	3,656,539	3,656,239	300	”
	·산림병해충방제	78,000	43,000	35,000	”
	·개인휴대위성전화	1,200	945	255	”
	·태풍어웨니아 및 집중호우	2,602,075	2,593,218	8,857	”
	·현장지휘차구입	13,500	13,457	43	”

(단위 : 천원)

장 별	사 업 명	금 액			관 련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경 제 개발비	·사방사업	6,143,640	6,124,341	19,299	산림환경연구소
	·산불진화진입도로	100,000	97,545	2,455	”
	·사방사업	5,646,389	5,612,965 (115,680)	33,424	산림환경연구소북부지소
	·산불진화진입도로	100,000	87,568	12,432	”
	·도유림숲가꾸기	88,303	87,192	1,111	산림환경연구소서부지소
	·사방사업	4,944,377	4,940,436	3,941	”
	·공익조림	87,714	83,595	4,119	산림소득개발원
	·숲가꾸기	49,819	47,065	2,754	수목원
	·산불방지	23,400	22,376	1,024	”
	·태풍어웨니아피해복구비	1,213,582	1,210,648	2,934	종합건설사업소
	‘05년자동차교통관리개선	1,634	0	1,634	종합건설북부지소
	‘06년자동차교통관리개선	774,596	774,583	13	”
	‘05년태풍나비피해복구	91,974	91,554	420	”
민방위비	소 계	1,546,193	1,529,029 (290,500)	17,164	
	·인력동원훈련보상금지원	15,400	15,330	70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13,245	11,148	2,097	”
	·민방위의날훈련경비	9,504	8,343	1,161	”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12,750	10,902	1,848	”
	·재난안전취약가구안전점검	88,757	86,693	2,064	”
	·중앙교육입교자여비	6,624	4,701	1,923	”
	·비상급수시설수질개선	9,000	8,193	807	”
	·지진해일경보시스템구축	860,000	854,775	5,225	”
	·구조차보강	530,913	528,944 (290,500)	1,969	소방행정과

3. 예비비 지출 내역(일반회계)

○ 예비비 예산 : 71,197,258천원

○ 지 출 결 정 : 10,105,492천원

○ 집　　행 : 9,178,238천원

○ 잔　　액 : 927,254천원(이월액 908,954 포함)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 행 액	집 행 사 유	관련부
계	9,178,238 (908,954)	22건	
태풍 “우쿵” 피해 복구	791,465	우렁쉥이 재해복구비	수산진흥과
강풍, 풍랑 피해 복구	83,500	시설 재해복구비	치수방재과
손해배상	199,177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종합건설사업소
강풍 피해복구	224,975	농작물 및 시설 재해복구비	친환경농업과
전국 바다의 날 행사	190,000	행사비용 부담금	해양정책과
손해배상	396,126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치수방재과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	1,845,315	피해농가 영농자재 특별지원	친환경농업과
손해배상	203,911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종합건설사업소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	2,251,355	피해농가 영농자재 특별지원	친환경농업과
우박피해 복구	892,618	농작물 및 시설 재해복구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 행 액	집 행 사 유	관련부서
우박 및 강풍 피해복구	79,650	농작물 및 시설 재해복구비	친환경농업과
호우피해 복구	168,749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치수방재과
〃	369,901 (352,755)	국가지원지방도 등 재해복구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9,600	〃	〃
손해배상	589,897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자치행정과
태풍 “나리” 피해복구	624,371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치수방재과
〃	33,750	〃	〃
〃	0 (217,861)	산사태 및 사방 재해복구비	산림과
〃	148,827 (338,338)	지방도 재해복구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	7,500	지방도 재해복구비	〃
구상금	65,901	민사소송 구상금	종합건설사업소
우박 및 강풍 피해복구	1,650	농작물 및 시설 재해복구비	산림과

※ ( )는 이월액임

4. 집행잔액(불용액) 사유별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사 유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계	95,955,937	76,376,174	19,579,763
계획 변경 취소	280,000	280,000	0
집행 사유 미발생	19,583,253	1,519,552	18,063,701
예산절감	940,705	742,409	198,296
예산집행잔액	7,738,414	7,209,274	529,140
보조금집행잔액	5,638,557	5,533,173	105,384
예 비 비	61,775,008	61,091,766	683,242

□ 계획변경·취소 내역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해당부서	금 액	사 유
계	280,000	
공보관실	30,000	언론보도의 효율적인 자료저장 관리와 통계분석을 위한 DB시스템 사용료로 우리도가 희망하는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음
새경북기획단	40,000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서 해외선진사례 비교견학을 취소
정책기획관	55,000	인구조사 및 가구조사 통계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인해 계획 취소
새마을봉사과	130,000	새마을 세계화사업 추진으로 중국시범지원사업 계획 취소
관광문화재과	10,000	11개 시·군 통합형 유교문화 관광지도 제작 계획 취소
축산경영과	15,000	축산정책개발워크숍을 계획하였으나, 한·미 FTA타결이후 중앙 및 타기관에서 유사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계획취소

□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해당부서	금 액	사 유
계	1,519,552	
의회사무처	4,500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참고인 미 선정 등 집행사유 미 발생
새경북기획단	600	전략과제관련 자료수집을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수집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정책기획관	47,175	조직개편에 따른 자체평가 만족도조사를 BSC만족도조사로 대체하고, 통계그래프 경진대회 미 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팀	287,550	효율적인 도정 업무추진과 직제개편 등 예측하지 못한 행사 보상금 등으로 각종 행사 중복에 따른 취소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체육진흥과	2,000	포항시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미 신청
전국체전기획단	956,495	전국소년체전 주 경기장 전산 및 통신설비사업 , 전국장애인체전 주경기장 보수사업 등으로 '06년 전국체전 시설을 활용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친환경농업과	8,246	친환경연찬회 및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제공 등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농산물유통과	138,022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을 당초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우수농산물심의회에서 2개소만 선정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10,000	공무원 의료비로써 치료대상자 미 발생
농업기술원	2,294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07.2월이후 공익근무요원 미 배정
영양고추시험장	320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집행사유 미발생
경제기획팀	3,600	행정안전부 경제협력관 미 발령
통상외교팀	34,191	국제교규 및 국제행사 관련 민간인해외여비, 외빈초청 관련 사유미발생, 국제관계자문대사 직책급 업무추진비 (1급기준편성 →2급기준집행 차액분)
산림과	4,250	밀렵신고 보상금 및 백두대간개발행위 협의대상지 전문가 조사수당으로서 2007년 밀렵신고자 및 개발행위 미 발생
수목원관리소	729	수목원 포지 내 병해충방제를 위한 약제구입 예산이나 포지관리민간위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여 사유 미발생
치수방재과	19,580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중 대규모 자연재해의 미발생과 재해영향평가심의 대상사업시행의 감소에 의한 관련 위원회 미 개최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해당부서)	금 액	사 유
계	18,063,701	
치수방재과	144,303	지방하천관리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과학기술진흥팀	17,919,398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용역이 완료(07.12월)되면 구체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코자 미 집행

제224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8. 6. 30(월)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종 합 심 사 보 고 서

경 상 북 도 의 회

목 차

Ⅰ. 소관부서 ····· 3

Ⅱ. 심사경과 ····· 3

Ⅲ. 제안이유 ····· 3

Ⅳ. 2007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 3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 3

2. 세입세출외 결산 현황 ····· 15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18

1. 총괄부문 ····· 18

2. 세입부문 ····· 19

3. 세출부문 ····· 20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28

Ⅶ. 토론요지 ····· 28

Ⅷ. 심사결과 ····· 28

Ⅸ. 소수의견의 요지 ····· 28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28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종 합 심 사 보 고 서

Ⅰ.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청

Ⅱ.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 10,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8. 6. 25

다. 상정일자 : 제22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 6. 25 : 상정·질의·토론·의결)

Ⅲ. 제안이유

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예병윤

나.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Ⅳ.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현황

가. 총 괄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51억 3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2조 5,400억 1천 2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2조 5,649억 6천 4백만원으로서

- 의존수입이 전체 88.3%인 2조 2,664억 1천 9백만원
- 자체수입이 전체 11.7%인 2,985억 4천 5백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은 2조 3,464억 7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4% 지출되었음.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 고
2,540,012	2,564,964	2,346,472	218,492	◦ 순세계잉여금 : 96,739 ◦ 이 월 금 : 95,825 · 명 시 이 월 : 39,424 · 사 고 이 월 : 56,401 ◦ 지 방 채 상 환 : 25,927 ◦ 국고보조금잔액 : 1

○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184억 9천 2백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958억 2천 5백만원, 지방채상환 259억 2천 7백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1백만원을 제외하고 967억 3천 9백만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함. 이는 2006년도 순잉여금 1,051억 3천 1백만원 대비 7.9%인 83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한 것임.

- 2007 잉여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A)	세출(B)	세 계 잉여금 (C=A-B)	이월액 (D)	지방채 상환 (E)	국고보조금 잔액 (F)	순잉여금 (C-D-E-F)	2006년도 순잉여금
계	2,564,964	2,346,472	218,492	95,825	25,927	1	96,739	105,131

나. 세 입

□ **세입예산현액은 2조 5,400억 1천 2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2조 5,651억 9천 1백만원이며, 이중 2조 5,649억 6천 4백만원은 수납(99.9%)되었고, 1천 7백만원은 불납 결손 되었으며, 2억 1천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 **불납 결손액 1천 7백만원은**

○ 입학금 및 수업료 1천 1백만원

○ 잡수입 6백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생의 자·퇴학에 의한 것이며 잡수입은 채무자 거소불명과 채무시효완성 등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 **미수납액 2억 1천만원은**

○ 재산수입 4천 2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7백만원

○ 잡수입 등 1억 6천 1백만원

재산수입은 대지료, 대가료 미납분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력부족에 기인한것이고,

잡수입은 변상금 등 기타수입 미수납금인 것으로 판단됨.

-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관 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불납결손 ④	미수납액 ⑤	수납율 ③/②
계		2,540,012	2,565,191	2,564,964	17	210	99.9
의존수입	소 계	2,247,001	2,266,419	2,266,419	-	-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72,210	1,989,718	1,989,718	-	-	100.0
	국고지원금	24,678	24,831	24,831	-	-	100.0
	법정전입금	228,119	228,119	228,119	-	-	100.0
	비법정전입금	10,092	9,322	9,322	-	-	100.0
	주민(기관등)부담금	1,964	4,496	4,496	-	-	100.0
	기타 지원금	9,938	9,933	9,933	-	-	100.0
자체수입	소 계	293,011	298,772	298,545	17	210	99.9
	재산수입	15,061	17,734	17,692	-	42	99.9
	입학금및수업료	28,062	28,384	28,366	11	7	99.8
	사용료및수수료	218	282	282	-	-	100.0
	잡수입	13,010	15,712	15,545	6	161	98.9
	이월금	189,867	189,867	189,867	-	-	100.0
	지방채	46,793	46,793	46,793	-	-	100.0

□ 세입결산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의존수입은 2조 2,664억 1천 9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88.3%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897억 1천 8백만원

○ 국 고 지 원 금 248억 3천 1백만원
○ 법 정 전 입 금 2,281억 1천 9백만원
○ 비 법 정 전 입 금 93억 2천 2백만원
○ 주민부담수입및기타지원금 등 144억 2천 9백만원

자체수입은 2,985억 4천 5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대비 11.7%임

○ 재 산 수 입 176억 9천 2백만원
○ 입학금 및 수업료 283억 6천 6백만원
○ 사용료 및 수수료 2억 8천 2백만원
○ 잡 수 입 155억 4천 5백만원
○ 이 월 금 1,898억 6천 7백만원
○ 지 방 교 육 채 467억 9천 3백만원

-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의 존 수 입				
소 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주민부담수입등
2,266,419	1,989,718	24,831	237,441	14,429

(단위 : 백만원)

자 체 수 입						
소 계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 업 료	사용료 및 수 수 료	잡수입	이월금	지 방 교육채
298,545	17,692	28,366	282	15,545	189,867	46,793

다. 세 출

□ 세출예산현액은 2조 5,400억 1천 2백만원으로서

예산액 2조 4,348억 8천 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051억 3천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중 2조 3,464억 7천 2백만원은 지출(92.4%)하였고, 958억 2천 5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3.8%)하였으며, 977억 1천 5백만원은 불용(3.8%)처리 하였음.

- 세출예산총괄 -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익년이월액	집행잔액(불용액)
2,434,881	105,131	2,540,012	2,346,472	95,825	97,715

2007년도 교육특별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49.9%), 물건비(3.2%), 경상이전비(36.4%) 등 경상지출이 전체지출의 89.5%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년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지출대비 구성비
합 계	2,540,012	2,346,472	92.4	100
1. 인건비	1,183,885	1,171,330	98.9	49.9
2. 물건비	79,683	75,436	94.7	3.2
3. 경상이전	874,030	853,814	97.7	36.4
4. 자본지출	258,406	144,547	55.9	6.2
5. 융자·출자	0	0	0	0
6. 보전지출	96,055	95,336	99.3	4.0
7. 자치단체내부거래	6,009	6,009	100	0.3
8. 예비비및기타	41,944	0	0	0.0

⇒ 불용액을 성질별로 보면

○ 인 건 비 125억 5천 5백만원

○ 물 건 비 38억 1천 1백만원

○ 경 상 이 전 48억 4백만원

○ 자본지출경비 338억 8천 3백만원

○ 보 전 지 출 7억 1천 8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419억 4천 4백만원

⇒ **불용액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 199억 3천 9백만원

○ 정원 및 호봉미달 운영 4백만원

○ 예산 절감 24억 7천 5백만원

○ 지급사유 미발생 439억 8백만원

○ 집 행 잔 액 313억 8천 9백만원

- 불용액 내역(성질별) -

(단위:백만원,%)

성질별	예산현액	불용액	원인별내역					불용율
			계획변경및취소	정원및호봉미달운영	예산절감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계	2,540,012	97,715	19,939	4	2,475	43,908	31,389	3.8
인건비	1,183,885	12,555	-	-	-	56	12,499	1.0
물건비	79,683	3,811	225	4	1,568	290	1,724	4.8
경상이전	874,030	4,804	1,051	-	4	245	3,504	0.5
자본지출경비	258,406	33,883	18,663	-	185	1,373	13,662	13.1
융자출자금	-	-	-	-	-	-	-	0.0
보전지출	96,055	718	-	-	718	-	-	0.7
내부거래	6,009	-	-	-	-	-	-	0.0
예비비및기타	41,944	41,944	-	-	-	41,944	-	100

- 관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백만원)

관 별	예산액 ①	예 산 결정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불용율 ⑥/③
합 계	2,434,881	105,131	2,540,012	2,346,472	95,825	97,715	3.8
유 치 원	35,762	2,174	37,936	37,598	54	284	0.7
초등학교	258,327	21,977	280,304	246,027	24,286	9,991	3.6
중 학 교	222,016	25,620	247,636	227,604	9,102	10,930	4.4
고등학교	302,608	32,334	334,942	307,287	15,986	11,669	3.5
특수학교	27,968	959	28,927	24,528	4,061	338	1.2
평생교육	7,686	170	7,856	7,488	38	330	4.2
급여관리	1,348,668	-	1,348,668	1,335,646	-	13,022	1.0
교육위원회	635	-	635	619	-	16	2.6
교 육 청	38,323	4,187	42,510	32,849	4,577	5,084	12.0
지역교육청	29,333	2,147	31,480	20,043	9,588	1,849	5.9
교육지원기관	25,440	15,680	41,120	11,447	28,133	1,540	3.7
지방채상환	96,054	-	96,054	95,336	-	718	0.7
예 비 비	42,061	-117	41,944	-	-	41,944	100

라. 예 비 비

○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1천 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천 3백만원임.

○ 그 내역은 강풍 피해시설 복구비로 지출되었음.

- 예비비 지출현황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잔 액	사 유
강풍피해 시설 복구비 3건	117	113		4	• 강풍으로 인한 학교 및 기관시설 피해복구비 (대보초, 한국생명과학고, 청송교육청)

마.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바. 예산이체

○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 이관에 따라 2007회계연도 예산이체액은 31억 7천 3백만원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기 관 명	과 목	사 업 명	이 체 액		이체일자
			증	감	
계			3,173	3,173	
교육정책정보과	관서운영비 (201)	경북교육의 방향수립 및 설명회	1		07.4.2
초등교육과	〃	〃		1	〃

(단위:백만원)

기 관 명	과 목	사 업 명	이 체 액		이체일자
			증	감	
교육정책정보과	업무추진비(204)	경북교육의 방향수립 및 설명회	1		07.4.2
초등교육과	〃	〃		1	〃
교육정책정보과	정액업무비(203)	직책급업무추진비	3		07.4.2
초등교육과	〃	〃		3	〃
교육정책정보과	업무추진비(2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		07.4.2
초등교육과	〃	〃		9	〃
교육정책정보과	학교회계 전출금(308)	학교도서관 만들기(중학교)	300		07.4.2
중등교육과	〃	〃		300	〃
교육정책정보과	사학지원비(310)	학교도서관 만들기(중학교)	300		07.4.2
중등교육과	〃	〃		300	〃
교육정책정보과	학교회계 전출금(308)	학교도서관 만들기(고등학교)	260		07.4.2
중등교육과	〃	〃		260	〃
교육정책정보과	사학지원비(310)	학교도서관 만들기(고등학교)	258		07.4.2
중등교육과	〃	〃		258	〃
교육정책정보과	관서운영비(201)	전국학교 도서관대회 및 학교도서관담당자 워크숍	10		07.4.2
중등교육과	〃	〃		10	〃
교육정책정보과	업무추진비(204)	전국학교 도서관대회 및 학교도서관담당자 워크숍	2		07.4.2
중등교육과	〃	〃		2	〃
교육정책정보과	관서운영비(201)	자율특색사업추진 및 학교평가(고, 특수)	47		07.4.2
기획예산과	〃	〃		47	〃

(단위:백만원)

기 관 명	과 목	사 업 명	이 체 액		이체일자
			증	감	
교육정책정보과	여비 (202)	자율특색사업추진 및 학교평가(고, 특수)	19		07.4.2
기획예산과	〃	〃		19	〃
교육정책정보과	업무추진비 (204)	자율특색사업추진 및 학교평가(고, 특수)	16		07.4.2
기획예산과	〃	〃		16	〃
교육정책정보과	보상금 (301)	자율특색사업추진 및 학교평가(고, 특수)	1,926		07.4.2
기획예산과	〃	〃		1,926	〃
혁신복지담당관	관서운영비 (201)	직무성과 및 균형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9		07.4.2
기획예산과	〃	〃		9	〃
혁신복지담당관	여비 (202)	균형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4		07.4.2
기획예산과	〃	〃		4	〃
혁신복지담당관	업무추진비 (204)	직무성과 및 균형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8		07.4.2
기획예산과	〃	〃		8	〃

사. 예산전용 : 해당사항 없음

아. 계 속 비 : 해당사항 없음

자. 이 월 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2조 5,400억 1천 2백만원 중 958억 2천 5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8%임

○ 명시이월　112건에 394억 2천 4백만원(41.1%)

○ 사고이월　102건에 564억 1백만원(58.9%)

- 이월액 현황 -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이 월 액				비 율 (%)
	계	계 속 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2,540,012	95,825	-	39,424	56,401	3.8

2. 세입세출 외 결산 현황

가. 채권 및 채무

1) 채　권

○ 전년도말 채권액 920억 4천 3백만원보다 25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된 945억 6천만원으로서

○ 국고 대여장학금 24억 5천 1백만원, 잡수입 7천 8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 재산수입 4백만원, 수업료 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채권 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감		
계	92,043	16,616	14,099	94,560	
원어민 영어교사 주 택 전 세 권	81	-	-	81	
전교조, 한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 대 보 증 금	120	-	-	120	
국고대여장학금	91,697	16,485	14,034	94,148	
재 산 수 입	115	42	46	111	
수 업 료	18	8	16	10	
잡 수 입	12	81	3	90	

2) 채 무

○ 채무액은 전년도말 채무액 1,283억 4천 8백만원보다 693억 3천 6백만원이 감소된 590억 1천 2백만원임.

- 채무 결산 현황 -

(단위: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 지 급 이 자	비 고
		계	채 무 발생액	상 환· 소멸액			
차입금	128,348	△69.336	46,793	116,129	59,012	-	

나. 재 산

1) 공유 재산

○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879억 5천 3백만원이 증가된 3조 5,428억 8천 2백만원임.

○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859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된 3조 4,825억 3천 8백만원이며

○ 잡종재산은 전년도말 보다 19억 6천 2백만원이 증가된 603억 4천 4백만원임.

- 공유재산 현황 -

(단위: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 재 액
		계	증	감	
계	3,454,929	87,953	151,432	63,479	3,542,882
행정재산	3,396,547	85,991	133,811	47,820	3,482,538
잡종재산	58,382	1,962	17,621	15,659	60,344

2) 물 품

○ 물품은 전년도말 보다 96억 6천 4백만원이 증가된 2,158억 5천 8백원으로서 전기·통신기기 등 10종, 44,193점 구입에 따른 물품 현재액임.

- 물 품 현 황 -

(단위:수량/점, 백만원)

품 종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 해 년 도 현 재 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전기·통신 기기 등 10 종	42,389	206,194	4,398	23,496	2,594	13,832	44,193	215,858

Ⅴ. 검토의견(전문위원 주근호)

1. 총괄부문

□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51억 3천 1백만원을 포함한 2조 5,400억 1천 2백만원이며

세입결산은 2조 5,651억 9천 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5,649억 6천 4백만원을 수납(99.9%)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2억 2천 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5,400억 1천 2백만원의 92.4%인 2조 3,464억 7천 2백만원임

○ 따라서 세입 및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2,184억 9천 2백만원으로 이월금 958억 2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67억 3천 9백만원, 지방채상환 259억 2천 7백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1백만원임

2. 세입부문

□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은(전체 예산 대비 88.3%) 100% 수납되었고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등 자체수입은(전체 예산 대비 11.7%) 99.9% 수납됨으로서 전체 수납율은 99.9%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징수률 (③/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7년	2,540,012	2,565,191	2,564,964	99.9	17	210
2006년	2,394,612	2,423,150	2,422,981	99.9	24	145

○ 재산수입은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결산서상 자체수입중 재산수입의 미수납액이 4천 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재산수입의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미납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비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의 규모가 달라 전입금 지원에 차이가 많으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예산 편성 시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매년 반복되는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액 등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연도별 세입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년도별	합 계	의존 수입	비율	자체 수입	비 율
2007	2,564,964	2,266,419	88.3	298,545	11.7
2006	2,422,981	2,085,450	86.1	337,531	13.9
2005	2,274,966	2,083,400	91.6	191,566	8.4
2004	2,132,264	1,896,940	88.9	235,324	11.1

3. 세출부문

□ 먼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 예산현액 2조 5,400억 1천 2백만원의 92.4%를 지출하였고 잔액은 1,935억 4천만원으로 2008년도 이월액 958억 2천 5백만원(이월율 3.8%), 불용액 977억 1천 5백만원임(불용율 3.8%)

- 세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2007년	2,540,012	2,346,472	92.4	95,825	3.8	97,715	3.8
2006년	2,394,612	2,233,115	93.2	105,130	4.4	56,367	2.4

□ 불용액에 대하여

○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3.8%인 977억 1천 5백만원으로서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99억 3천 9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439억 8백만원, 집행잔액 313억 8천 9백만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413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불용액은 경비절감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결산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시급한 다른 사업의 추진을 연기 또는 취소하게 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투입과 그에 따른 성과산출을 불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집행실적과 수요예측 등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임

- 불용액 발생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원인별 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 미달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집행 잔액
2007	2,540,012	97,715	3.8	19,939	4	2,475	43,908	31,389
2006	2,394,612	56,367	2.3	7,618	4	1,346	18,421	28,978
2005	2,271,871	40,636	1.8	8,217			7,436	24,206
2004	2,291,179	66,429	2.9	1,607		659	38,867	25,296

- 불용액 발생이 많은 기관 -

(단위 : 백만원, %)

기 관 별	예산 현액	집 행 액	익년이월액	불 용 액	불용율
경주교육청	74,492	58,683	5,770	10,039	13.5
구미교육청	74,501	65,383	849	8,269	11.1
예천교육청	11,643	10,618	54	971	8.3

□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 2007년도 이월액은 958억 2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8%를 차지하여 지난해 4.4%보다 소폭 감소함

○ 사업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현실성, 투자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확정하여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이 연도말 2회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예산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업의 사전 이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 시행연도에 맞춘 연동계획의 철저한 수립과 단위사업의 실적평가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월액 발생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년도	예산 현액	이월액			비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07	2,540,012	95,825	39,424	56,401	3.8
2006	2,394,612	105,130	43,227	61,903	4.4
2005	2,271,871	146,808	83,527	63,281	6.5
2004	2,191,179	113,336	60,056	53,280	5.2

□ 경상적 경비의 이월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통한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를 사고이월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 법 제50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

○ 2007년 이월사업에 있어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비의 성질상 이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정보과 6,200천원, 문경교육청 29,500천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음

- 명시이월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사 업 명	과목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명시이월액	불용액
교육정책정보과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운영	관 서 운영비	2,300	-	2,300	2,300	-
		여 비	1,500	-	1,500	1,500	-
		업 무 추진비	2,400	-	2,400	2,400	-
문경교육청	지역과함께하는 학교사업	관 서 운영비	27,000	3,143	23,857	22,900	957
		여 비	6,000	1,000	5,000	5,000	-
		업 무 추진비	2,000	400	1,600	1,600	-

□ 전년도 이월액 재이월 및 과다불용에 대하여

○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중 학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비와 구미교육청 청사증축 사업비의 경우 전액 불용 처리 한 것은 행정력 낭비 및 예산관리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 200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12쪽)를 참조하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하여 세출예산 이월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예산을 전액 재이월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예산집행 시에는 각 단위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해당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명시이월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구성비
학교전자문서시스템구축	3,660	0	0	3,660	100
청사증축(구미교육청)	400	0	0	400	100
흥해중 다목적강당 개축(포항교육청)	1,000	0	1,000	0	
후포초 급식소 개축 (울진교육청)	277	0	277	0	
부구초 옹벽설치 (울진교육청)	152	0	152	0	

□ 예산편성 후 미집행에 대하여

○ 교육재정은 세입재원이 대부분 의존수입에 차지하고 있어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느끼면서도 일부 과목은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함으로써

○ 예산을 사장시키고 필요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 집행가능성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반드시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전액 불용 과목 조서-

(단위 : 천원)

기 관 명	과 목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결산서)
합 계	32건				6,676,080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12202-34300-204)	400	-	-	400	P157
	여비 (15400-32800-202)	300	-	-	300	P167
	여비 (13203-32200-202)	300	-	-	300	P177
	사학지원비 (13205-32400-310)	1,200	-	-	1,200	P178
	학교회계전출금 (15000-32500-308)	3,200	-	-	3,200	P201
	사학지원비 (15000-32500-310)	1,600	-	-	1,600	P201
	민간경상이전 (43144-34300-304)	6,000	-	-	6,000	P230
	학교회계전출금 (15401-34100-308)	40	-	-	40	P239
	비정규직보수 (31201-11200-102)	36,125	-	-	36,125	P242
	보상금 (43107-34100-301)	4,320	-	-	4,320	P256
	보상금 (43143-41200-301)	300	-	-	300	P264
김천교육청	관서운영비 (13401-34100-201)	1,800	-	-	1,800	P384
	민간경상이전 (44101-33300-304)	2,760	-	-	2,760	P388
구미교육청	시설비 (12701-34500-401)	6,577,351	-	-	6,577,351	P435
	사학지원비 (13206-31200-310)	450	-	-	450	P441
상주교육청	사학지원비 (11401-34300-310)	390	-	-	390	P508
	관서운영비 (12305-32600-201)	990	-	-	990	P513
문경교육청	관서운영비 (44101-33300-201)	350	-	-	350	P552

(단위 : 천원)

기 관 명	과 목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결산서)
경산교육청	관서운영비 (45106-32500-201)	1,400	-	-	1,400	P583
영양교육청	관서운영비 (12401-34300-201)	500	-	-	500	P670
청도교육청	학교회계전출금 (13303-32800-308)	2,200	-	-	2,200	P727
	시설비 (44201-42100-401)	10,000	-	-	10,000	P734
고령교육청	관서운영비 (12303-32800-201)	3,000	-	-	3,000	P745
	사학지원비 (13203-32100-310)	100	-	-	100	P750
	시설비 (21104-32300-401)	17,550	-	-	17,550	P757
칠곡교육청	여비 (21104-32300-202)	861	-	-	861	P810
예천교육청	사학지원비 (11401-34300-310)	130	-	-	130	P819
	학교회계전출금 (13305-21100-308)	1,003	-	-	1,003	P833
봉화교육청	학교회계전출금 (11201-32200-308)	300	-	-	300	P844
	관서운영비 (13204-32200-201)	500	-	-	500	P855
	학교회계전출금 (13303-32800-308)	460	-	-	460	P856
울릉교육청	관서운영비 (12502-33300-201)	200	-	-	200	P904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하여

○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14쪽)에 따르면 사학법인들이 최소한의 부담인 법정부담금 12%도 거의 납부하지 않고 교육청에 이를 의존함에 따라 매년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사립학교의 지원은 계획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며 사학법인의 수익재산에 대한 고수익화 유도와 법정부담금 납부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등을 통하여 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Ⅶ.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Ⅷ.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경상북도 신도청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년 6월 19일
발 의 자 : 이재철의원 외 32인

1. 조사목적

○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2008년 6월 8일 발표한 경상북도 신도청예정지 평가 선정발표 이후 도민의 화합과 축제분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도청 예정지 평가 선정과정에 있어 조례위반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도민 여론 확산과 의혹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바,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도민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경북 신도청 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제출코자 함.

2.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 조사대상 :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한 대상기관 및 관련부서

○ 사무범위 :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 및 평가, 채점, 선정업무 전반

3. 조사위원회

○ 별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4. 조사 발의 이유

○ 경상북도 신도청예정지 평가 및 선정과정에 있어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6조 제1항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적용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유치행위로 인한 기 제보된 감점사항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 2008년 6월 7일. 영주→안동·예천→의성후보지 현장실사평가에 있어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안동·예천후보지 평가를 앞두고, 안동 하회마을 추임새 식당에서의 점심제공과 인근 탈춤공연을 관람하게 한 진실규명이 필요함.

○ 경상북도 신도청예정지 선정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표 및 채점, 가중치 적용, 계수조정, 집계 등에 관한 원점 재검토

○ 경상북도 신도청예정지 평가 선정에 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도민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5. 발의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 생략

6. 근거법령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자치법 제41조, 시행령 39~41조)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4조, 제15조)

<경북 신도청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찬 성 자 서 명

의 원 명	서 명	비 고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년 6월 19일
발 의 자 : 이재철의원 외 32인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56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제안이유

○ 경북도청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선정 발표한 경북도청 이전후보지 평가결과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발표이후 도민의 분란과 갈등을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의혹을 해소코자 평가 과정의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함.

3. 목 적

○ 경북도청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선정 발표한 경북도청 이전후보지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규정의 준수와 공정성 결여 등 도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축복속에 이루어져야 할 도청이전 사업이 오히려 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경북도청 이전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상을 구현하고자 함.

4. 활동방향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감점 적용 실태조사

○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에 관한 실태조사
○ 평가위원별 신청 후보지에 대한 평가 점수 실태조사
○ 경북도천이전추진위원회 간사 미교체 사유조사
○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실태조사
○ 평가 및 추진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의 일치 여부
○ 평가 후보지인 안동 관내에서 식사 및 탈춤공연을 관람한 경위
○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한 조사
○ 기타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5. 위원구성

○ 도청이전 후보지역을 신청하지 않은 11개 시군별 각 1명씩하여 11명의 도의원으로 구성

○ 활동기간을 조사 시작일부터 30일간

□ 붙임자료

○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서명명부 각1부.

경북 신도청예정지 선정과정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찬 성 의 원 서 명

의 원 명	서 명	비 고